

---

# 도서(섬)지역 통계(DB) 구축

---

2008. 12.



# 제 출 문

수신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본 보고서를 ‘도서(섬)지역 통계(DB) 구축’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유 정 석

---

연구자

윤종현(수석연구원)

박승규(수석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자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도서(섬) 개념 및 관련 법·제도 .....	2
1. 도서(섬)의 개념 .....	2
2. 도서(섬)의 유형 분류 .....	5
3. 관련 국가계획 및 법규 .....	8
제3장 도서(섬)통계 항목의 개발 및 분류 .....	12
1. 기존의 도서(섬) 통계 항목 분석 .....	12
2. 도서개발 주요 지표 분석 .....	32
3. 주요 선진국의 도서개발 정책 방향 .....	36
4. 정책 수요 조사 .....	40
5. 도서(섬)통계 항목 개발 및 분류 .....	41
제4장 도서(섬)통계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	46
1. 도서(섬)통계 관리체계 구축 방안 .....	46
2. 도서(섬)통계 DB화 방안 .....	48
3. 도서(섬)통계 활용 방안 .....	50
제5장 결론 .....	51
참고문헌 .....	53
부록1 도서(섬) 관련 법령 .....	55
부록2 인천시 도서(섬) 현황 조사·분석계획 .....	89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도서(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
  - 도서는 국토공간, 해양휴식공간으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도서 지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부족
  - 도서 관련 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활용 가능성 확대
-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 구축 필요
  - 도서지역의 인프라 구축 실태, 생활패턴 등 파악
  - 정책의 성과 및 환류 정보를 통한 향후 사업방향 제시
- 국민(주민)의 정책적 참여기회 확대와 편의성 증대
  - 도서(섬) 관련 국민의 이해 및 참여 확대
  - 도서(섬) 관련 정보 제공의 편의성 증대

### 2) 연구의 목적

- 도서(섬)의 개념 파악
  - 국내의 도서개발촉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도서(섬)의 개념 검토
  - 국제법 상의 도서(섬) 개념 검토
- 도서(섬) 관리에 적합한 통계항목 개발 및 분류
  -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활용 가능한 통계항목 개발
  - 통계항목의 분류(예: 생산기반, 생활, 문화, 환경위생 등)
- 도서통계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모색
  - 자료수집방법, 통계관리단위, 통계조사주기 등 관리체계구축 방안 모색
  - 통계자료 DB화 방안 모색
  - 통계자료 활용 방안 모색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도서의 개념은 국내 관련 법과 국제해양법으로 토대로 고찰
- 통계항목의 개발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 및 도서사업 평가자료를 근거로 반드시 필요한 항목 추가 혹은 기존 DB자료 중 수정
- 도서통계 관리체계 구축 발전방안은 통계생성과 관리의 추진 주체와 과정 중심으로 제시

###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분석
  - 관련 이론 및 기존 연구 검토
  - 도서 관련 국가계획, 법·제도, 평가자료 등
  - 기존의 도서통계 항목 분석
  - 정책 수요 조사(설문결과) 분석
- 사례조사 분석
  - 주요 선진국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도서개발 정책 사례
  - 행정안전부 도서개발 주요 지표 사례
- 통계 분석
  - 도서 현황 분석 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 제2장 도서(섬) 개념 및 관련 법·제도

### 1. 도서(섬)의 개념

- 도서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도서개발촉진법의 목적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

- 도서는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만조 때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고, 방파제,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는 제외하되, 연육 10년이 지난 도서라도 개발도서대상으로 지정되어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도서는 도서로 인정함
- 도서의 범위를 제주도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를 말함(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 특별법

-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정도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무인도서)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 도서의 범위를 독도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특정도서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함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함)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함,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봄

○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초안

- 섬에 대한 정의가 최초로 시도 됨
- 섬이란 수면으로 둘러싸인 만조 시 수면위에 있는, 자연히 형성된 육지 지역<sup>1)</sup>

○ 신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1982)

- 섬이라 함은 바다로 둘러싸이고 만조시에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 '자연적 형성'(a natural formation)은 인공섬을 배제 함
- '육지 지역'(an area of land)은 섬이 최소한 해저에 고착되어야 하고, 육지와 유사한 항구성을 가질 것이 요구됨
- '물로써 둘러싸인'(surrounded by water)의 정의에서 대륙과 섬의 구분은 법 기능적으로 필요성이 거의 없음, 해양관할 수역을 창출하고 해양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대륙과 섬 사이에 논리적 구별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만조시 노출'(emergence at high-tide)은 섬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됨
- 암석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바위로 된 육지의 융기'(a naturally formed rocky elevation of land)이며, 인간거주 가능성 및 독자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보잘 것 없는 바위 덩어리<sup>2)</sup>라 볼 수 있음
- 1968년 3차 해양법회의에서 섬의 기준과 암석에 관한 논의에서 면적에 의한 구분을 시도한 바 있음, 예컨대 1평방 km이하를 암석의 요건으로 제시하였으나 1982년 신해양법 협약 121조 3항의 암석에 관한 규정에는 숫자로 표기된 면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음(이장희, 2005).
- 섬과 암석과의 차이점 비교(이장희, 2005)
  - 섬은 언제나 인간의 안정적 군거(群居) 가능, 암석은 인공적 지원없이 불가능
  - 섬은 독자적 경제생활 가능, 암석은 인공적 지원없이 불가능
  - 섬은 모두 바위로 만 구성되지 않고, 암석은 주로 바위로 된 육지의 융기
  - 섬은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누리고, 암석은 해양관할권만 누림

1) 1958년 영해법 제10조 1항; 1982년 신해양법 121조 1항, 이장희. (2005). "국제법상 섬과 암석의 차이", <제1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발표집>.

2) 면적과 관련하여 제3차 해양법회의(1968)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1982년 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 암석에 관한 규정에는 숫자로 표기된 면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주장들에서 공통적으로 1평방 km이하의 면적을 언급하고 있다(이장희, 2005).

## 2. 도서(섬)의 유형 분류

- 섬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섬의 생성원인, 입지형태, 규모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짐<sup>3)</sup>

**<표 1> 도서(섬)의 유형 분류**

구 분	유 형
입지형태	군도 혹은 제도, 열도
생성원인	육도, 양도, 육계도, 연육도, 연도
거주형태	유인도, 무인도, 일시거주도서
규모	island, isle, islit, rock
구성지질	바위섬, 모래섬
기능	모도, 자도
행정구역	시·군·구도, 읍·면·동도

- 섬의 입지형태에 따라 군도 혹은 제도, 열도로 구분됨
  - 군도 혹은 제도란 대소의 여러 섬들이 무리를 이루어 입지하여 있을 경우를 말함
  - 이들 도서가 일직선 형태로 입지하여 있을 때는 열도라 함. 예로 우리나라에는 덕적군도, 선죽열도, 금오열도 등이 있음
- 섬의 생성원인에 따라 육도, 양도 그리고 육계도, 연육도, 연도로 구분
  - 육도는 육지부인 대륙 혹은 반도의 지반침강 및 해면상승에 의한 해수의 이입으로 분리, 고립되어 생성된 경우를 말함. 이와 달리 양도란 해양에서의 화산활동 및 연안 역에서의 산호초 성장 등 새로운 지형형성에 따라 생성된 경우임
  - 육계도는 파랑 등 지질작용에 따른 사주형성으로 이것이 육지와 연결되었을 경우를 지칭함. 연육도는 교량이나 방조제 등에 의하여 육지와 연결된 도서를 지칭하며, 섬과 섬이 교량으로 연결된 경우는 연도라고 부름

3) 문화관광부. (2006).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연구>. p. 19-21.

- 섬의 거주형태에 따라 유인도, 무인도, 일시거주 도서로 구분됨. 민간인이 연중 상당기간 생업을 영위·거주하는 도서를 유인도라 하고 이밖에 도서를 무인도라 지칭함. 한편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을 생산하기 위해 일정기간에 한해 주민이 거주하는 도서는 일시거주 도서라 지칭함
- 또한 행정구역에 따라 관할행정청인 시·군·구청이 있는 도서를 시·군·구도(市·郡·區島), 읍·면·동사무소가 있는 도서를 읍·면·동도(島)라 일컬음
- 이외에 섬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음(<표 2> 참조)

**<표 2> 도서(섬)의 규모에 따른 분류**

구 분	규 모	예 시
island	2,560 $km^2$ (7억 6,800만평) - 2,175.6천 $km^2$	그린란드(2,175.6천 $km^2$ )
isle	2.56 $km^2$ - 2,560 $km^2$	제주도(1840), 울릉도(73), 청산도(33)
islit	0.00256 $km^2$ 이상~2.56 $km^2$ 미만	불도(0.071), 외도(0.051)
rock	0.00256 $km^2$ 미만	기타 암석

- 구성지질에 따라 바위섬과 모래섬으로 구분됨. 바위섬의 지표는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정 깊이 이상 착천할 경우 기반암이 다수 발견되는 지역이며, 모래섬은 대부분의 지질이 모래나 또는 모래보다 잘고 진흙보다는 굵은 침적토로 구성된 곳을 지칭함
- 기능에 따라 모도와 자도로 구분됨. 모도는 명령항로가 아닌 정기항로를 갖고 있으며 정기여객선의 운항횟수가 많고 주민의 기초행정수요 및 생활편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주변도서보다 면적이 비교적 큰 모도는 중심도서라고도 불리는데 반해, 그 반대개념인 자도는 부속도서라 불리며 모도에 의존적임

- 이외에 섬 간 연계성에 의하여 단독 섬과 클러스터된 섬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단독 섬이란 섬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독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섬을 말함
- 클러스터된 섬은 여러 개의 섬이 일정 영역에 모여 있는 경우에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의 중심 섬과 주변 섬의 관계에서 기능이 나누어져 있거나 혹은 연계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 부처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도서(섬) 구분<sup>4)</sup>
  - 행정안전부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섬)을 개발대상도서로 지정
  - 개발대상도서의 지정기준은 10인 이상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 혹은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 도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는 총 372개소로 총 유인도(428개)의 86.9% 차지

**<표 3> 지역별 개발대상도서 현황**

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2	33	4	25	23	217	1	62	7

자료: 행정안전부(2007),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 환경부는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158개 특정도서를 지정
- 특정도서의 개소 수는 무인도서의 5.7% 정도 차지하며 면적으로 전체 무인도서의 11.7% 차지

4) 문화체육관광부. (2008).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pp. 21-23.

**<표 4> 지역별 개발대상도서 현황**

구분	계	부산	인천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도서 수	158	3	26	1	39	14	8	65	2
면적 (천㎡)	150.217	30	1,433	181	1,365	1,469	1,013	144.413	313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 국토해양부는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무인도서 (총 2,678개)를 절대보전 도서, 준보전 도서, 개발가능 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로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4가지 유형분류를 완료할 예정

### 3. 관련 국가계획 및 법규

#### 1) 관련 국가계획<sup>5)</sup>

##### (1)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도서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0개년 단위로 수립·시행되고 있음
-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총8개 부처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행정안전부 소관의 계획은 유형화계획별 투자와 연육·연도교사업 투자 계획으로 나뉘어짐
- 유형화계획별 투자계획은 도서를 유형화(관광자원형, 문화유적형, 농업자원형, 수산자원형, 체험관광형 등)하여 그에 따라 계획 수립
- 연육·연도교사업 투자계획은 도서주민에 대한 설문조사('07년 3월) 결과를 토대로 도서주민의 최대숙원사업으로 조사됨에 따라 2개의 계속사업과 8개의 신규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5) 문화체육관광부. (2008).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pp. 24-33.

**<표 5> 도서종합개발계획 부처별 투자계획**

소 관 부 처 별		단 위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합 계		도서/건	351/1,407	2,520,781
행정자치부	유형화 및 연육.연도	도서/개소	351/1,109	1,787,394
문화관광부	가고 싶은 섬	도서/개소	4/4	40,200
농림수산식품부	방 조 제	도서/개소	11/27	42,406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	46	82,759
보건복지부	보건 진료소 개선	도서/개소	-	-
환경부	식수원 개발 등 6개사업	도서/개소	50/60	233,755
건설교통부	개발촉진지구	도서/개소	1/6	34,000
국토해양부	지방어항건설	개소	67	250,000
산림청	조림, 숲가꾸기 등 11개사업	도서/개소	53/134	50,26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8) 연구자료 재인용

##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과 관련한 최상위 계획임, 계획을 구성하는 6대 추진전략 중에서 섬 지역과 관련하여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전략이 있음
  - 농산어촌이 특성을 살려 개성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의 활력증진을 위해 농산어촌에 체육·관광·레저·노인복지 시설 유치와 특성화된 관광마을 조성
- 권역별로는 광주권의 전라남도예 신해양관광·문화클러스터를 구축함

## (3)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

-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은 2008년~2017년까지 10년간 4개도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계획임
  - 해양관광거점 조성 과 연계 관광지를 개발, 서해안관광벨트의 인문·자연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관광개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목표

- 대규모 연육·연도 사업의 추진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 섬관련 세부사업으로는 충청남도 안면도 지구, 경기도의 대부도와 제부도, 전라남도의 흥도, 압해도, 유부도, 가의도, 불모도, 다이아몬드 아일랜드 등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4)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전국 연안 및 해양을 대상으로 2004년~2013년까지 10개년 동안 해양관광(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관광진흥계획임
- 섬 지역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연안관리, 어촌·어항, 해상교통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 해양관광 정책 및 사업 계획을 갖고 있음

#### (5)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한 환경부 소관의 법으로 2005년~2014년까지 153개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보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특정도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임
- 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무인도서 및 특정도서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
  - 특정도서 내 사유지중 민감한 지역을 단계적인 매입·국유화 추진
  - 훼손된 특정도서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및 복원 추진
  - 독도에 대하여는 연1회 모니터링 외에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자연환경정밀조사를 실시

## 2) 관련 법규<sup>6)</sup>

### (1) 자연공원법

- 자연공원법의 목적은 자원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
-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내륙국립공원과 해상국립공원의 규정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섬 지역의 경우 많은 지역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포함되어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며 상업시설은 동종시설의 경우 1km 제한을 두고 있음
  -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건축물에 연면적, 건폐율, 높이 등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섬의 낙후성을 개선하는데 어려움

### (2)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며 무인도서관리 및 항만 등의 제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 4개 관리유형 즉,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와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3) 도서개발촉진법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도서개발촉진법의 목적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

6) 문화체육관광부. (2008).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pp. 21-33, 86.

#### (4)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환경부가 주관하며 생물생태의 역동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서 현재와 장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5) 도서·벽지교육진흥법

-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며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6) 해운법

-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에 의거 도서민의 여객운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제3장 도서(섬)통계 항목의 개발 및 분류

### 1. 기존의 도서(섬) 통계 항목 분석

#### 1) 도서(섬) 통계 현황 총괄

- 도서(섬)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한국통계연감, 행정자치부, 국토연구원 등에서 발간되고 있으나 각기 통계의 기준이 다르며, 특히

간척사업 및 섬의 거주민들의 유출입이 빈번하여 면적 및 인구에 대한 수치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sup>7)</sup>

- 한국통계연감에는 도서(섬)의 정보가 빈약하고, 섬의 실제적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위한 내부자료에 많음
- 단, 전국 단위의 섬 인구 및 산업구조, 기반시설 및 자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통계연감과 국토연구원 보고서 등에서 보완됨

## 2) 도서(섬) 통계 실제

### (1) 도서(섬) 일반 현황

- 통계청의 한국통계연감(2005)에서는 2005년 말 기준 총 3,170개의 도서(섬) 중 유인도(有人島)는 491개, 무인도(無人島) 2,679개로 기록

**<표 6> 전국의 도서(섬) 현황**

구 분	섬의 수(개)			유인도		
	계	유인도	무인도	면적(km <sup>2</sup> )	인구(명)	가구 수(호)
합 계	3,170	491	2,679	3,701.17	869,801	288,183
부 산	41	3	38	34.58	192,183	59,701
인 천	154	42	112	640.91	94,172	33,046
울 산	4	0	4	0	0	0
경 기	65	12	54	43.74	7,215	2,768
강 원	32	0	32	0	0	0
충 남	261	37	224	150.47	20,262	6,867
전 북	109	26	83	35.31	6,468	1,985
전 남	1,969	280	1,689	1,810.35	243,969	85,025
경 북	47	4	43	73.60	10,426	3,840
경 남	425	80	345	898.41	289,124	92,719
제 주	63	8	55	13.80	5,982	2,232

자료: 통계청(2005), 한국통계연감

7) 문화관광부. (2006).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연구>. p. 21-31

○ 지역별로 연육도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전국 3,170개 도서 중에서 육지와 연결된 도서 수는 44개로 전체대비 1.4%에 불과함. 가구 수에 있어서는 288,183세대 중에서 210,888세대로 전체대비 73.2%에 이르며, 인구수의 경우에는 869,801명 중에서 658,335명으로 전체대비 75.7%가 연육도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전국 도서 면적 3,786.480km<sup>2</sup> 중에서 연육도서의 면적이 1,936.325km<sup>2</sup>로 나타나 전체 대비 51.1%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됨.<sup>8)</sup>

**<표 7> 연육도서 현황**

단위: 세대/명/km<sup>2</sup>

구분	도서				연육도서			
	수	가구 수	인구 수	면적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면적 (비율)
부산광역시	41	59,701	192,183	37.900	1 (2.4%)	58,416 (97.8%)	188,376 (98.0%)	13.950 (36.8%)
인천광역시	154	33,046	94,172	647.020	3 (1.9%)	20,192 (61.1%)	60,810 (64.6%)	304.780 (47.1%)
울산광역시	4	-	-	0.043	1 (25%)	-	-	0.003 (7.0%)
경기도	65	2,768	7,215	44.570	6 (9.2%)	2,423 (87.5%)	6,443 (89.3%)	39.950 (89.6%)
강원도	32	-	-	0.261	-	-	-	-
충청남도	261	6,867	20,262	163.014	7 (2.7%)	5,095 (74.2%)	15,269 (75.4%)	117.402 (72.0%)
전라북도	109	1,985	6,468	37.950	1 (0.9%)	17 (0.9%)	56 (0.87%)	0.530 (1.4%)
전라남도	1,969	85,025	243,969	1,856.291	16 (0.8%)	38,380 (45.1%)	115,883 (47.5%)	672.910 (36.3%)
경상북도	47	3,840	10,426	73.730	-	-	-	-
경상남도	425	92,719	289,124	910.250	9 (2.1%)	86,365 (93.1%)	271,498 (93.9%)	786.800 (86.4%)
제주 특별자치도	63	2,232	5,982	15.451	-	-	-	-
합 계	3,170	288,183	869,801	3,786.480	44 (1.4%)	210,888 (73.2%)	658,335 (75.7%)	1,936.325 (51.1%)

※비율 : 각 지역의 도서 수, 가구 수, 인구 수, 면적에 대한 상대적 비율임.

8) 행안부. (2008).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 지역 전체면적 중 섬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전체 면적의 35.9%가 되며, 그 원인은 옹진군, 강화군 등 군도로 이루어진 섬이 많기 때문임. 다음 순으로 전라남도는 10.2%로 나타남
- 유인도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임야가 60.6%, 답(畓) 12.7%, 전(田) 8.9% 순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하천, 제방, 도로, 대지 등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음
- 현재, 전체 유인도서 가운데 46.6%인 225개 도서가 무의(無醫)도서이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가 54개이며, 전체 도서의 상수도 보급률은 38.2%에 그치고 있음
- 과거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섬은 지리적 특성으로 개발의 순위가 항상 불리하였음. 지금의 섬은 영해와 경제수역(EEZ)의 설정기준이 되며 수산, 항만, 해양관광지 등 해양의 전초기지 역할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도서면적을 조사한 결과, 전국 도서의 총면적은 3,786.48km<sup>2</sup>이며, 해안선 연장은 8,728.731km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지역별 도서면적을 보면, 전라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의 총면적은 1,856.291km<sup>2</sup>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 경상남도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도서의 총면적은 910.250km<sup>2</sup>,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도서의 총면적 163.014km<sup>2</sup>,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도서의 총면적은 647.020 km<sup>2</sup>, 전라북도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도서의 총면적은 37.950km<sup>2</sup>로 나타남. 이러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면적이 비교적 넓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해안선 연장선은 전라남도가 4,716.930km, 경상남도 1,414.590km, 인천광역시 989.470km, 충청남도 802.130km, 제주특별자치도 253.000km, 전라북도 208.580km, 부산광역시 161.970km, 경기도 106.250km, 경상북도 65.500 km, 강원도 8.461km, 울산광역시 1.850km순으로 나타남. 해안선 연장에서 있어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그리고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도서면적 및 해안선 연장

단위: km<sup>2</sup>/km

구분	도서면적(비율)	해안선 연장(비율)
부산광역시	37.900(1.00%)	161.970(1.86%)
인천광역시	647.020(17.09%)	989.470(11.34%)
울산광역시	0.0430(0.00%)	1.850(0.02%)
경기도	44.570(1.18%)	106.250(1.22%)
강원도	0.261(0.01%)	8.461(0.10%)
충청남도	163.014(4.31%)	802.130(9.19%)
전라북도	37.950(1.00%)	208.580(2.39%)
전라남도	1,856.291(49.02%)	4,716.930(54.04%)
경상북도	73.730(1.95%)	65.500(0.75%)
경상남도	910.250(24.04%)	1,414.590(16.21%)
제주특별자치도	15.451(0.41%)	253.000(2.90%)
합계	3,786.480(100%)	8,728.73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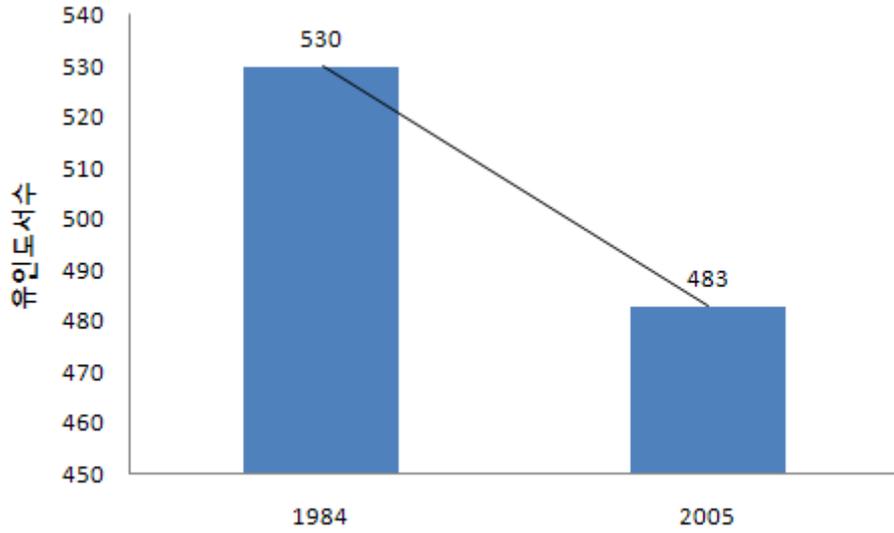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재정리

(2) 도서(섬) 지역의 인구<sup>9)</sup>

- 도서(섬)은 불리한 지리적 조건, 취약한 산업구조 등으로 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단적으로 우리나라 섬 가운데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서는 1984년 530개였으나 2005년에는 483개로 무려 47개가 줄어 8.9%가 감소되었고, 같은 기간에 인구는 434천명에서 176천명으로 59.4%가 감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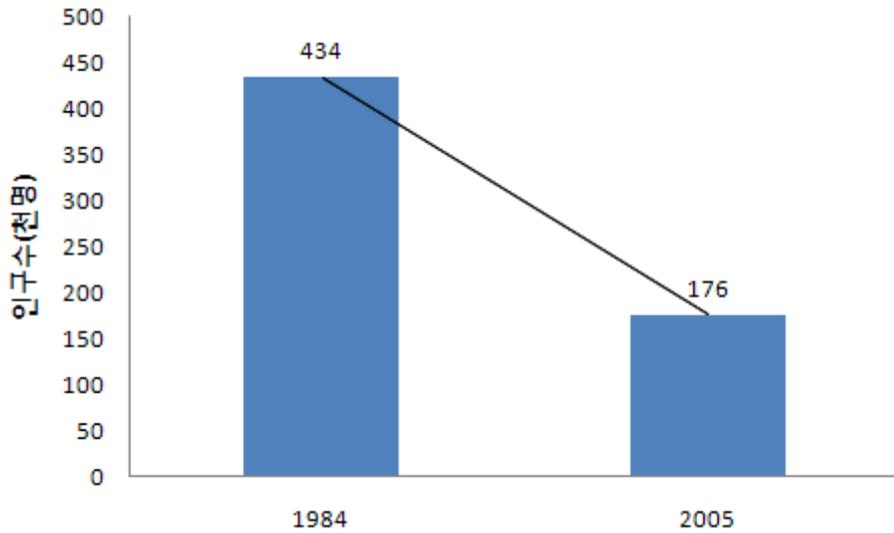
9) 문화관광부. (2006).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연구>. p. 21-31

<그림 1> 유인도서수 변화(1984~2005)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그림 2> 유인도서 지역 인구 변화(1984~2005)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섬은 극심한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음. 대표적인 동·서·남해의 섬들 중 1개소씩 선정하여 인구감소 현황을 살펴봄
  - 신안군의 경우 1970년대 166,532명인 인구가 2004년에 47,646명으로 34년의 기간동안 71.4%가 감소하였고, 완도군의 인구는 1970년에 145,339명에서 2004년에는 60,141명으로 이 기간동안 58.6%가 감소하였으며, 울릉군은 23,000명에서 9,201명으로 60.0%의 높은 감소율을 보임
  - 연육된 지도읍을 제외한 신안군의 인구감소율은 71.4%이고, 완도읍과 군외면을 제외한 완도군의 도서지역은 68.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섬 인구의 노령화도 극심하여 '04년 기준의 신안군 전체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3.2%이고, 완도군은 24.2%, 울릉군 16.7%임

**<표 9> 주요 도서지역의 인구추이**

구 분		인구(명)		증감률(%)	'04년 노인 인구 비율(%)
		1970	2004		
서 해	신안군	166,532(141,471)	47,646(41,953)	-71.4(-70.3)	23.1
남 해	완도군	145,339(110,154)	60,141(34,663)	-58.7(-68.5)	24.0
동 해	울릉군	23,000	9,201	-60.0	16.7

주 : 연육지역을 제외한 수치임(신안군은 지도읍을, 완도군은 완도읍과 군외면을 제외)

### (3) 도서(섬) 지역의 산업구조<sup>10)</sup>

- 우리나라 도서(섬)의 산업구조는 1994년 현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80.5%이며, 2, 3차 산업 종사 가구 수는 전체의 19.5%로 나타났음. 1차 산업의 경우 전국의 1차 산업 취업률이 13.6%인데 섬 지역은 전국의 약 6배로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음(국토연구원, 1996)

10) 문화관광부. (2006).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연구>. p. 21-31

- 도서(섬) 지역의 1차 산업 중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통념과는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월등히 많다는 특징이 있음. 9개 시·도 중 농업비율이 평균치가 넘는 곳은 경기도 79.8%, 인천광역시 73.0%, 전라남도 58.9%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의 3.7%임(국토연구원, 1996)
- 가구당 농산물 생산량이 높은 20개 섬은 모두 전남 신안군에 입지해 있고, 그중 대포작도가 연가구당 생산량 43,261kg으로 가장 많음. 수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도서는 전남 완도군의 금당도로 가구당 105,216kg을 생산하며, 특히 해조류 양식생산량이 큼(국토연구원, 1996)

#### (4) 도서(섬) 지역의 기반시설

- 섬 지역의 취약점 중의 하나는 답의 경지정리율이 전국평균인 79.0%의 2/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48.1%이고, 수리답율은 전국평균치인 74.3%에 비해 훨씬 낮은 62.9%에 불과함. 특히 부산, 전북, 경북지역의 섬은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없을 정도로 지형적 악조건을 갖고 있음(국토연구원, 1996)
- 농업 생산장비 역시 섬 지역의 농가 100호당 35.6대의 경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의 2/3수준이며 기계화영농의 주력기종인 트랙터, 바인더, 콤파인 등의 농기계 보유율 및 집약도는 트랙터의 집약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비해 저조해 농업의 현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국토연구원, 1996)
- 우리나라 항만 및 어항은 총 2,175개소로 항만이 45개소, 1, 2, 3종 어항이 414개소, 소규모어항이 1,716개소가 있음. 항만에 있어 무역항은 27개소로 제주도와 연육도서 등 육지부 연안에 입지해 있고, 연안항은 18개소인데 이중 연평도, 대흑산도, 홍도, 나로도, 거문도 등 5개항만이 섬에 위치함(국토연구원, 1996)
- 섬의 어항은 1종보다는 2종 및 3종, 소규모어항의 분포가 높음. 2종은 전체의 34.8%를 차지함. 3종 어항은 어장개발, 어선대피를 위해 낙도 또는 외지에 소재하여 모두 섬에 입지해 있는 특성(국토연구원, 1996)

- 전국 도서 도로연장 및 포장(율)을 조사한 결과, 도서 전체 도로연장은 20,590.85km이며, 도로포장은 11,204.28km로 전체대비 5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도로연장의 경우, 경상남도 12,229.93km, 전라남도가 5,576.84km로 전국에서 가장 길며,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100.6km, 전라북도 78.95km로 전국에서 가장 도로연장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도로포장율에 있어서, 전라북도 97.0%, 부산광역시 8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에 전라남도 40.1%, 경기도 34.1%, 경상북도 33.7%로 나타나 가장 도로포장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10>도로연장 및 포장**

단위: km

구분	연장	포장(율)
부산광역시	113.90	100.1(87.9%)
인천광역시	1,550.30	635.8(41.0%)
경기도	160.63	54.76(34.1%)
충청남도	474.30	203.1(42.8%)
전라북도	78.95	76.57(97.0%)
전라남도	5,576.84	2,236.70(40.1%)
경상북도	305.40	102.9(33.7%)
경상남도	12,229.93	7,830.20(64.0%)
제주특별자치도	100.6	64.25(63.9%)
합계	20,590.85	11,204.28(54.4%)

- 지역별 선착장, 물양장, 그리고 방파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선착장의 경우 410개의 도서에 1,79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108.40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물양장의 경우 192개의 도서에 43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84.33074km<sup>2</sup>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방파제의 경우 192개 도서에 4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연장은 61.03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 지역별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현황**

구분	선착장			물양장			방파제		
	도서 수	개소	연장(km)	도서수	개소	면적(km <sup>2</sup> )	도서 수	개소	연장(km)
부산광역시	2 (0.5%)	22 (1.2%)	1.54 (1.4%)	1 (0.5%)	8 (1.8%)	0.00850 (0.01%)	2 (1.0%)	2 (0.4%)	0.48 (0.8%)
인천광역시	32 (7.8%)	76 (4.2%)	7.31 (6.7%)	25 (13.0%)	48 (11.0%)	81.24500 (96.3%)	23 (12.0%)	36 (7.3%)	8.67 (14.2%)
경기도	11 (2.7%)	14 (0.8%)	2.08 (1.9%)	5 (2.6%)	5 (1.1%)	0.02480 (0.01%)	3 (1.6%)	4 (0.8%)	1.20 (2.0%)
충청남도	29 (7.1%)	43 (2.4%)	5.79 (5.3%)	6 (3.1%)	8 (1.8%)	0.41600 (0.5%)	16 (8.3%)	20 (4.0%)	4.40 (7.2%)
전라북도	19 (4.6%)	27 (1.5%)	1.96 (1.8%)	12 (6.3%)	17 (3.9%)	0.01600 (0.01%)	16 (8.3%)	21 (4.2%)	3.82 (6.3%)
전라남도	243 (59.3%)	1,250 (69.6%)	72.44 (66.9%)	114 (59.4%)	246 (56.3%)	0.26217 (0.3%)	101 (52.6%)	253 (51.0%)	25.03 (41.0%)
경상남도	-	-	-	2 (1.0%)	9 (2.1%)	2.30000 (2.7%)	1 (0.5%)	14 (2.8%)	2.93 (4.8%)
경상북도	71 (17.3%)	359 (20.0%)	17.09 (15.8%)	22 (11.5%)	82 (18.8%)	0.03226 (0.01%)	24 (12.5%)	131 (26.4%)	12.20 (20.0%)
제주특별자치도	3 (0.7%)	6 (0.3%)	0.19 (0.2%)	5 (2.6%)	14 (3.2%)	0.02600 (0.01%)	6 (3.1%)	15 (3.0%)	2.30 (3.8%)
합계	410 (100%)	1,797 (100%)	108.40 (100%)	192 (100%)	437 (100%)	84.33074 (100%)	192 (100%)	496 (100%)	61.03 (100%)

자료: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재정리

- 지역별 항만 및 어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항만의 경우, 무역항 9개소, 연안항 10개소로 총 19개의 항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어장의 경우, 1종 어항 14개소, 2종 어항 171개소, 3종 어항 38개소, 그리고 소규모항 1,084개소로 총 1,307개소의 어항이 있음.

**<표 12> 지역별 항만 및 어항 현황**

구분	항만			어항				
	계	무역항	연안항	계	1종	2종	3종	소규모항
부산광역시	2(10.5%)	1	1	13(1.0%)	-	3	-	10
인천광역시	2(10.5%)	-	2	84(6.4%)	-	31	5	48
경기도	-	-	-	9(0.7%)	-	4	-	5
충청남도	-	-	-	36(2.8%)	1	13	1	21
전라북도	-	-	-	24(1.8%)	-	5	4	15
전라남도	7(36.8%)	2	5	761(58.2%)	4	64	17	676
경북상도	1(5.3%)	-	1	14(1.1%)	-	3	3	8
경남상도	6(31.6%)	6	-	350(26.8%)	9	46	7	288
제주특별자치도	1(5.3%)	-	1	16(1.2%)	-	2	1	13
합계	19(100%)	9	10	1,307(100%)	14	171	38	1,084

자료: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재정리

- 지역별 급수 및 용수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수도의 경우에는 42개 도서에 486개소가 존재하며,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264개 도서에 5,455개소가 있음. 우물의 경우에는 276개의 도서에 20,262개소가 있으며, 급수탱크의 경우에는 153개의 도서에 3,948개소가 존재함. 그리고 다목적용수원의 경우에는 24개 도서에 464개소가 있음.

**<표 13> 지역별 급수 및 용수원 현황**

구분	상수도		간이상수도		우물		급수탱크		다목적 용수원	
	도서 수	개소	도서 수	개소	도서 수	개소	도서 수	개소	도서 수	개소
부산광역시	1 (2.4%)	1 (0.2%)	1 (0.4%)	18 (0.3%)	1 (0.4%)	20 (0.1%)	-	-	-	-
인천광역시	2 (4.8%)	2 (0.4%)	30 (11.4%)	142 (2.6%)	16 (3.6%)	1,561 (7.7%)	2 (1.3%)	9 (0.2%)	3 (12.5%)	4 (0.9%)
경기도	-	-	7 (2.7%)	18 (0.3%)	1 (0.4%)	1 (0.0%)	-	-	3	3 (0.6%)
충청남도	1 (2.4%)	442 (90.9%)	23 (8.7%)	2,335 (42.8%)	17 (6.2%)	3,968 (19.6%)	5 (3.3%)	218 (5.5%)	1 (4.2%)	96 (20.7%)
전북도	-	-	11 (4.2%)	27 (0.5%)	7 (2.5%)	26 (0.1%)	2 (1.3%)	5 (0.1%)	3 (12.5%)	3 (0.6%)
전남도	25 (59.5%)	26 (5.3%)	119 (45.1%)	511 (9.4%)	223 (80.8%)	14,562 (71.9%)	133 (86.9%)	3,635 (92.1%)	12 (50.0%)	354 (76.3%)
경북상도	1 (2.4%)	3 (0.6%)	1 (0.4%)	2,294 (42.1%)	1 (0.4%)	1 (0.0%)	2 (1.3%)	2 (0.1%)	-	-
경남상도	10 (23.8%)	10 (2.1%)	71 (26.9%)	108 (2.0%)	6 (2.2%)	8 (0.04%)	7 (4.6%)	18 (0.5%)	-	-
제주특별자치도	2 (4.8%)	2 (0.4%)	1 (0.4%)	2 (0.03%)	4 (1.4%)	115 (0.6%)	2 (1.3%)	60 (1.5%)	2 (8.3%)	4 (0.9%)
합계	42 (100%)	486 (100%)	264 (100%)	5,455 (100%)	276 (100%)	20,262 (100%)	153 (100%)	3,948 (100%)	24 (100%)	464 (100%)

자료: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재정리

- 지역별 전기시설에서 한전전기시설은 296개 도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 가구 수는 277,923세대에 이릅니다.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서는 60개이며, 4,987세대가 이를 활용하고 있음. 그리고 자가발전시설의 경우에는 120개의 도서에 5,200세대가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162개의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 14,311kW를 생산하고 있음.

**<표 14> 지역별 전기시설 현황**

구분	한전		발전소		자가발전			
	도서 수	가구 수	도서 수	가구 수	도서 수	가구 수	발전기 수	발전용량(kW)
부산광역시	3 (1.0%)	59,701 (21.5%)						
인천광역시	25 (8.4%)	29,525 (10.6%)			14 (11.7%)	3,520 (67.7%)	37 (22.8%)	10,490 (73.3%)
경기도	5 (1.7%)	2,519 (0.9%)	2 (3.3%)	84 (1.7%)	4 (3.3%)	165 (3.2%)	6 (3.7%)	583 (4.1%)
충청남도	19 (6.4%)	5,932 (2.1%)	7 (11.7%)	716 (14.4%)	6 (5.0%)	157 (3.0%)	11 (6.8%)	444 (3.1%)
전라북도	16 (5.4%)	1,307 (0.5%)	4 (6.7%)	586 (11.8%)	4 (3.3%)	85 (1.6%)	8 (4.9%)	175 (1.2%)
전라남도	158 (53.2%)	80,854 (29.1%)	41 (68.3%)	3,257 (65.3%)	77 (64.2%)	911 (17.5%)	75 (46.3%)	1,670 (11.7%)
경북상도	1 (0.3%)	3,838 (1.4%)			2 (1.7%)	2 (0.03%)	2 (1.2%)	84 (0.6%)
경남상도	66 (22.2%)	92,287 (33.2%)	6 (10.0%)	344 (6.9%)	8 (6.7%)	88 (1.7%)	9 (5.6%)	139 (1.0%)
제주특별자치도	3 (1.0%)	1,960 (0.7%)			5 (4.2%)	272 (5.2%)	14 (8.6%)	726 (5.1%)
합계	296 (100%)	277,923 (100%)	60 (100%)	4,987 (100%)	120 (100%)	5,200 (100%)	162 (100%)	14,311 (100%)

자료: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체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재정리

- 지역별 통신시설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전화가설 도서는 483개이며, 가구 수는 285,656세대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화미가설 도서는 139개이며, 가구 수는 2,793세대인 것으로 조사됨.

**<표 15> 지역별 통신시설 현황**

구분	전화가설		전화미가설	
	도서 수	가구 수	도서 수	가구 수
부산광역시	3(0.6%)	59,701(20.9%)		
인천광역시	41(8.5%)	32,997(11.5%)	6(4.3%)	20(0.7%)
경 기 도	11(2.3%)	2,978(1.0%)	5(3.6%)	87(3.1%)
충청남도	32(6.6%)	6,536(2.3%)	11(7.9%)	331(11.9%)
전라북도	26(5.4%)	1,985(0.8%)		
전라남도	279(57.8%)	84,569(29.6%)	66(47.5%)	456(16.3%)
경상북도	3(0.6%)	3,840(1.3%)		
경상남도	80(16.6%)	90,833(31.8%)	46(33.1%)	1,886(67.5%)
제주특별자치도	8(1.7%)	2,217(0.8%)	5(3.6%)	13(0.4%)
합 계	483(100%)	285,656(100%)	139(100%)	2,793(100%)

자료: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체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재정리

- 지역별 보건의료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병·의원은 25개 도서에 276개, 한의원은 17개 도서에 77개, 보건소는 164개 도서에 258개, 그리고 약국은 61개 도서에 313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6> 지역별 보건의료시설 현황**

구분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약국	
	도서수	개소	도서수	개소	도서수	개소	도서수	개소
부산광역시	1(4.0%)	107(38.9%)	1(5.9%)	27(35.1%)	2(1.2%)	2(0.8%)	2(3.3%)	75(24.0%)
인천광역시	3(12.0%)	23(8.3%)	2(11.7%)	7(9.1%)	20(12.2%)	47(18.2%)	5(8.2%)	24(7.7%)
경기도	1(4.0%)	2(0.7%)			1(0.6%)	2(0.8%)	1(1.6%)	1(0.3%)
충청남도	1(4.0%)	2(0.7%)	1(5.9%)	1(1.3%)	10(6.1%)	11(4.3%)	1(1.6%)	5(1.6%)
전북 라도					9(5.5%)	10(3.9%)	1(1.6%)	1(0.3%)
전남 라도	13(52.0%)	41(14.9%)	9(52.9%)	17(22.1%)	95(57.9%)	131(50.7%)	42(68.9%)	105(33.5%)
경북 상도	1(4.0%)	2(0.7%)	1(5.9%)	2(2.6%)	1(0.6%)	2(0.8%)	1(1.6%)	10(3.2%)
경남 상도	3(12.0%)	97(35.1%)	2(11.8%)	22(28.5%)	20(12.2%)	47(18.2%)	6(9.9%)	89(28.4%)
제주특별자치도	2(8.0%)	2(0.7%)	1(5.9%)	1(1.3%)	6(3.7%)	6(2.3%)	2(3.3%)	3(1.0%)
합 계	25(100%)	276(100%)	17(100%)	77(100%)	164(100%)	258(100%)	61(100%)	313(100%)

자료: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체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재정리

- 지역별 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총 339개(전체대비 60.0%)도서에서 초·중·고등학교가 625개가 있으며, 반면 학교가 없는 도서는 총 226개(전체대비 40.0%)인 것으로 조사됨. 초등학교는 228개 도서에 432개, 중학교는 74개 도서에 131개, 그리고 고등학교는 37개 도서에 6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 지역별 학교시설 현황**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없는 도서
	도서수	학교수	도서수	학교수	도서수	학교수	도서수	학교수	
부산광역시	6 (1.8%)	34 (5.4%)	2 (0.9%)	17 (3.9%)	2 (2.7%)	9 (6.9%)	2 (5.4%)	8 (12.9%)	1 (0.4%)
인천광역시	41 (12.1%)	75 (12.0%)	21 (9.2%)	44 (10.2%)	12 (16.2%)	18 (13.7%)	8 (21.6%)	13 (21.0%)	12 (5.3%)
경기도	4 (1.2%)	6 (1.0%)	2 (0.9%)	4 (0.9%)	1 (1.4%)	1 (0.8%)	1 (2.7%)	1 (1.6%)	9 (4.0%)
충청남도	21 (6.2%)	27 (4.3%)	18 (7.9%)	22 (5.1%)	2 (2.7%)	4 (3.1%)	1 (2.7%)	1 (1.6%)	19 (8.4%)
전북도	13 (3.8%)	13 (2.1%)	10 (4.4%)	10 (2.3%)	2 (2.7%)	2 (1.5%)	1 (2.7%)	1 (1.6%)	14 (6.2%)
전라남도	200 (59.0%)	301 (48.2%)	136 (59.6%)	222 (51.4%)	45 (60.8%)	56 (42.7%)	19 (51.4%)	23 (37.1%)	122 (54.0%)
경상남도	3 (0.9%)	15 (2.4%)	1 (0.4%)	8 (1.9%)	1 (1.4%)	6 (4.6%)	1 (2.7%)	1 (1.6%)	
경상북도	43 (12.7%)	146 (23.4%)	32 (14.0%)	99 (22.9%)	7 (9.5%)	33 (25.2%)	4 (10.8%)	14 (22.6%)	47 (20.8%)
제주특별자치도	8 (2.4%)	8 (1.3%)	6 (2.6%)	6 (1.4%)	2 (2.7%)	2 (1.5%)			2 (0.9%)
합계	339 (100%)	625 (100%)	228 (100%)	432 (100%)	74 (100%)	131 (100%)	37 (100%)	62 (100%)	226 (100%)

자료: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재정리

**(5) 수산자원 및 축제<sup>11)</sup>**

- 수산자원은 특산품 및 이를 활용한 수산물 축제를 동시에 볼 수 있음.  
수산물 축제 중 오징어 축제는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울릉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전어축제는 남해안의 사천시, 하동군, 광양시 그리고 서해안의 서천군 등에서 개최되고 있음
- 특히, 기장멸치 축제, 양양 연어축제, 영덕 대게축제, 노화 전복축제, 모슬포 방어축제와 보목 자리돔 큰잔치 등은 지역을 대표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자원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11) 문화관광부. (2006).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연구. p. 21-31

**<표 18> 특산품 및 수산물 축제 현황**

시도별	시군별	축 제	특 산 품
부산시	기장군	기장멸치축제	다시마, 기장미역, 멸치, 멸치젓, 기장오징어, 곰장어, 갈치
인천시	강화군	강화도 새우젓축제	선어, 건어, 새우젓, 젓갈류
	옹진군		까나리액젓, 꽃게, 해삼, 가리비, 굴, 바지락, 김
강원도	강릉시	오징어축제	전복, 오징어, 젓갈류, 은어회
	양양군	양양연어축제	연어, 은어, 돌미역, 고등어
	동해시	오징어축제	오징어
	삼척시	맨손 넙치, 송어 잡기대회	돌미역
	속초시	오징어맨손잡이	조미오징어, 젓갈, 건어물
	고성군	명태, 재첩잡이, 연어꿈잔치	명태, 털게, 도치
충청남도	태안군	백사장 대하축제	김, 까나리액젓
	홍성군	남당대하축제, 광천토굴새우젓, 조선김축제	대하, 광천토굴새우젓
	보령시		까나리액젓, 꽃게, 주꾸미, 키조개, 천북굴, 대하, 전어
	당진군	안섬 풍어제	참붕어, 자라, 대하, 참게
	서천군	동백꽃주꾸미축제, 전어축제	자하젓, 김, 꽃새우, 꽃게장
경상북도	경주시	바다풍어제 및 회축제	멸치젓
	포항시	포항과메기 축제	과메기, 피데기 오징어
	영덕군	영덕대게축제	대게
	울릉군	오징어축제, 낚시축제	오징어, 돌미역, 돌김
	울진군	울진대게축제	울진대게, 고포미역, 오징어, 은멸치, 참문어, 골뱅이
경상남도	고성군	-	대하, 갯장어
	남해군	해산물 축제	젓갈, 멸치, 참게장, 붕장어, 전어, 갈치, 전복, 우렁쉥이, 굴, 홍합, 바지락, 개조개, 키조개
	통영시	-	멸치, 굴, 돌미역, 바닷장어, 양념명게, 전복
	거제시	-	개조개, 대구, 멸치, 새우보리, 사백어, 송어, 자연산돌미역, 전복
	사천시	전어축제	감성돔, 노래미, 전어, 개불
	하동군	참송어축제, 술상전어축제	섬진강재첩, 은어, 개조개, 참게장, 피조개
	전라북도	군산시	주꾸미축제
전라남도	부안군	-	곰소젓갈, 위도꽃새우, 김 위도멸치
	고창군	수산물 축제	풍천장어, 염전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다시마축제, 노화전복축제, 소안 고기잡이바다체험	다시마, 전복, 툇, 김

시도별	시군별	축 제	특 산 품
	여수시	남해안생선요리축제, 참장어축제	돌김, 쥐치어, 학꽂치, 문어, 멸치
	진도군	진도참전복 축제	돌미역, 돌김, 멸치
	목포시	목포 수산물 대축제	김, 세발낙지, 홍어
	무안군	갯벌세발낙지큰잔치, 도리포해맞이행사와 송어잔치	-
	신안군	가거도 바다낙시체험, 게르마늄 개펄축제	갯풍 참민어, 흑산홍어, 병어, 새우젓, 우럭, 가리비, 굴, 전복, 대하, 낙지, 돔, 돌미역, 김
	장흥군	장흥키조개큰잔치, 정남진 석화구이, 갯장어 음식대축제	바지락, 키조개, 김, 미역, 매생이
	강진군	-	짬뽕어, 참고막, 바지락, 대합, 전어
	영광군	영광굴비만들기 체험, 광백사 염전 체험	영광굴비, 보리새우, 백합, 건새우, 설도젓갈
	해남군	-	김
	보성군	대포 갯귀신제	꼬막
	함평군	-	세발낙지, 석화, 보리새우(오도리), 문질망둑(문질이), 뱀장어, 돌김, 엽삭젓, 토하젓

자료: 해수부(2004),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안) 자료 재정리, 문광부(2006) 재인용

#### (6) 유·무형 문화재 자원<sup>12)</sup>

- 우리나라 어촌 및 섬 인근지역에 존재하는 유형 또는 무형 문화재들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임. 유형문화재 중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것, 역사적 인물, 설화와 희귀한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
-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은 기장척화비, 죽전왜성, 분오리 돈대와 초지진 등임.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강릉단오제, 안섬풍어제, 위도띠뽀놀이, 영당 풍어굿 등이 있음

12) 문화관광부. (2006).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연구. p. 21-31

**<표 19> 어촌 및 섬 지역 유·무형 문화자원 현황**

시도별	시군별	유·무형 문화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척화비, 죽전왜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분오리 돈대, 남장포대, 초지진
	옹진군	감람암, 물범, 신도, 사빈, 콩돌해안, 두무진(서해의 해금강)
울산광역시	-	처용암, 주전봉수대, 방기리 알바위
강 원 도	강릉시	강릉단오제, 청학동 소금강, 해운정
	동해시	동해어달산봉수대
	삼척시	삼척죽서루, 삼척대이리동굴지대, 삼척초당동굴 외
	속초시	금강굴, 토왕성, 간돌림, 대포성토
	고성군	청간정, 천학정, 간성향교, 불이문, 전통가옥, 건봉사지, 왕곡마을, 능파교, 흥교, 연안김씨열녀비, 화암사, 건봉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 내파수도
	홍성군	마애석불
	보령시	보령독산리 독살, 죽도앞바다 고려청자, 상록수림
	당진군	송산회화나무, 안섬풍어제
	서천군	한산세모시짜기, 한산소곡주, 자산팔읍길쌈놀이, 서천대목장, 서천부채장, 가정목은선생문집판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릉
	울릉군	독도천연보호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산지, 낙동강하류철새 도래지, 안골포굴강, 거북선
	남해군	물건방조어부림, 미조상록수림, 남해 선구 줄끗기
	통영시	남해안별신굿, 홍도괭이갈매기 번식지
	하동군	하동송림
전라북도	부안군	풍어제, 위도띠벤틀놀이(중요무형문화재)
	고창군	고창청계리청자요지, 삼인리송악
전라남도	완도군	장도 청해진 유적, 정도리 구계 등, 주도 상록수림, 예송리 상록수림, 미라리 상록수림, 맹선리 상록수림
	진도군	진도의 바닷길, 백조도래지
	장흥군	여수 영당 풍어굿
	고흥군	봉래면 상록수림

자료: 해수부(2004),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안) 자료 재정리, 문광부(2006) 재인용

**(7) 도서(섬) 지역의 교통 현황**

- 우리나라의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은 여객선, 차도선, 도선, 어선 등이 있음. 교통수단들 중 어선의 수가 가장 많고 도선, 차도선, 여객선의 순으로 그 추이를 보이고 있음<sup>13)</sup>
- 섬의 기능에 따라 어업에 비중이 큰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은 어선보유가 많은데 반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광역시는 어선에 비해 여객선 보유량이 많음. 이는 수도권이란 큰 배후시장이 근거리에 있어 관광수요가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표 20> 우리나라 섬의 교통수단 현황**

구분	여객선	차도선	도선	어선보유(척)
부산광역시	0	0	165	806
인천광역시	50	124	68	1,291
경기도	8	0	4	290
충남	13	32	8	2,106
전북	32	0	0	1,536
전남	20	457	465	21,268
경북	4	0	5	330
경남	75	105	69	9,756
제주	6	12	3	394
합계	390	730	787	37,777

자료: 행정안전부(2006), 도서종합개발사업 내부자료 재정리

13) 문화관광부. (2006).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연구. p. 21-31

## 2. 도서개발 주요 지표 분석

### 1) 1, 2차 도서개발사업 주요지표

- 1, 2차 도서개발사업은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기반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 분야에 투자되었음<sup>14)</sup>
  - 관광개발이든 생산개발이든 낙후된 주민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서개발의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와 어항시설 개발과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음
  - 섬 주민들에게 마을 앞 방파제, 선착장, 호안시설 등은 선박을 보호하고 어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필수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서개발 내용 중에서 어항개발과 기초생활기반시설 및 도로시설은 핵심 개발대상에 해당됨

**<표 21> 제1차, 제2차 도서개발사업 주요지표**

분야	영역	지표
생활기반시설	급수시설	상수도, 간이상수도, 다목적용수원개발, 급수탱크
	전기시설	한전전기시설, 자가발전시설
	도로시설	비법정도로, 연육·연도
	도선건조	도선건조
	철부선접안시설	철부선접안시설
생산기반시설	소규모어항개발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호안시설, 부잔교
	농업기반시설	방조제, 배수갑문, 도수로정비, 저수지정비
	저장시설	저장시설
	소득증대시설	소득증대시설
문화복지기반시설	복지시설	복지회관, 대합실, 주택개량
	의료시설	의료시설
환경위생시설	환경시설	하수처리시설, 진개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생활안전시설	하천정비	하천정비

14)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39-40.

## 2) 3차 도서개발사업을 위한 도서진단 주요지표

- 행정안전부(2008)<sup>15)</sup> 연구는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대상인 372개 도서의 실태를 진단하고, 진단자료에 대한 군집분석을 토대로 도서유형을 분류하고 있음.
- 도서를 진단하기 위한 영역으로는 생활기반, 생산기반 그리고 문화복지기반을 선정하였음. 진단지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31개 지표를 선정

**<표 22> 도서진단지표**

진단영역	진단지표
생활기반 (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밀도</li> <li>·상수도 설치가구 비율</li> <li>·전기시설 설치가구 비율</li> <li>·통신시설 보유가구 비율</li> <li>·가구대비 쓰레기 처리시설 면적</li> <li>·가구대비 하수처리시설 면적</li> <li>·법정도로 포장율</li> <li>·자가용 보유가구 비율</li> <li>·버스 수 대비 인구 수</li> <li>·택시 수 대비 인구 수</li> <li>·여객선 일일 운항대비 인구 수</li> <li>·방파제 연장</li> </ul>
생산기반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선 수</li> <li>·물양장 면적</li> <li>·항만 면적</li> <li>·어항 면적</li> <li>·어장 면적</li> <li>·화물차 수</li> <li>·어선보유 대비 선착장 연장</li> <li>·어업가공 및 저장시설 면적</li> <li>·농업생산물 가공 및 저장시설 면적</li> <li>·농업용수시설 면적</li> <li>·제조업체 수</li> </ul>

15)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104-106.

진단영역	진단지표
문화복지기반 (8개)	·보건의료시설 수 대비 인구 수 ·노인복지시설 수 대비 노인인구 수 ·대합실 수 대비 인구 수 ·공중화장실 수 대비 인구 수 ·체육시설 수 대비 인구 수 ·공원 수 대비 인구 수 ·아동복지시설 수 대비 아동인구 수 ·인터넷 설치가구 비율

### 3) 도서개발 진단지표

- 행정안전부(2008)<sup>16)</sup> 연구는 획일적인 도서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도서의 특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부합할 수 있는 맞춤형 도서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서개발 진단지표 개발
- 도서개발 진단지표는 도서보유자원 특성과 인구특성, 산업기반 특성과 정주환경 특성 등 4영역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
  - 도서 자원 특성은 도서의 입지적 특성과 규모, 생태자원, 문화유적자원, 토지이용, 수자원 이용 정도, 등 도서가 개발될 수 있는 근거 자원이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진단 부문
  - 인구특성은 그러한 도서 자원을 기초로 향후 개발 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변수로서, 주로 인구수와 노령화 비율 및 경제활동인구비율로서 측정함
  - 산업기반 특성은 도서의 주요 소득원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변수로서 도서 주민들의 소득원, 생산기반 및 관광기반 시설 정도를 측정함. 생산기반은 어업, 농업, 광제조업 생산 기반 시설 등임.
  - 정주환경 특성은 도서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 문화 시설에 관한 측정 변수로서, 주요 내용은 학교, 보건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대합실,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공원, 인터넷설치여부 등임.

16) 행정안전부(2008), <도서진단제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43-44.

**<표 23> 도서개발 진단지표**

진단부문	진단항목	세부진단지표
도서 자원	도서입지형태	육지근접형/군도형(모도,자도)/고립형
	도서면적	·도서면적                      ·부속무인도서 수
	도서생태자원	·해수욕장 연장   ·갯벌 면적   ·해안선 연장 ·동식물군락 면적 ·온천 면적   ·천연기념물 유무(종류)
	도서문화유적자원	·개발가능 역사 자원 유무(사건, 인물) ·문화재 수   ·특이시설 및 전시장   ·민속자원
	토지이용	·도서면적대비 농경지 면적 비율 ·농업특산물 (종류/수)
	수자원이용	·어장 면적   ·양식장 면적   ·수산특산물 (종류/수)
인구 특성	인구정주	·인구수   ·가구수   ·인구증감률   ·면적대비 인구비율
	인구활력	·노령화 비율(65세 이상 인구수/전체인구수) ·경제활동인구비율(18세~64세인구수/전체인구수)
산업 기반	소득기반	·전체가구대비 1차 산업(농림어업) 소득가구비율 ·전체가구대비 2차 산업(제조업) 소득가구비율 ·전체가구대비 3차 산업(서비스업) 소득가구비율
	생산기반	·어선 수   ·물양장 면적   ·방파제 연장   ·항만 면적 ·어항 면적   ·화물차 수   ·어선보유 대비 선착장 연장 ·어업가공및저장시설 면적 ·농업생산물가공및저장시설 면적   ·농업용수시설 면적 ·광제조업 사업체(종류/수)   ·광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수
	관광기반	·숙박시설(종류/수)   ·위락시설(종류/수) ·도서체험시설 수   ·해양레포츠 시설(종류/수)
정주 환경	주거 형태	·주택 형태별 비율
	교통편의성	·법정도로 포장률   ·가구대비 자가용 보유비율 ·인구대비 버스보유 비율   ·인구대비 택시보유 비율
	육지와와의 접근성	·연육 및 연도 수   ·육지도달 소요시간 ·여객선 1일 운항횟수
	생활기반	·가구대비 상수도/전기시설/통신시설 설치 및 보유비율 ·가구대비 쓰레기 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면적 비율
	문화복지	·인구대비 보건의료시설/대합실/공중화장실/체육시설/공 원면적 비율 ·학생 수 대비 학교 수 비율 ·노인인구대비 복지시설 면적 비율 ·아동대비 아동복지시설면적 비율 ·가구대비 인터넷 설치 가구 비율

#### 4) 종합

- 1, 2차 도서개발사업 주요지표의 경우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이나 도서개발의 기초시설을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도서의 전략적 개발 방향이나 유형화된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함
- 3차 도서개발사업을 위한 진단지표 또한 1, 2차 사업과 유사한데 다만 진단결과를 토대로 도서를 유형화 하고 있는 점이 차별화됨
- 도서개발 진단지표의 경우 기존과 차별화되게 도서자원은 물론 산업기반, 정주환경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음

### 3. 주요 선진국의 도서개발 정책 방향

#### 1) 일본<sup>17)</sup>

##### (1) 낙도진흥법

- 일본은 본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낙도의 후진성을 제거하고, 낙도 주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1953년에 의원입법으로 낙도진흥법을 제정
- 낙도진흥계획에서는 낙도의 진흥 및 기본방침, 교통 및 통신 시설에 관한 조치, 산업 진흥 및 자원 개발 촉진, 생활환경 정비, 의료 확보, 고령자 복지, 교육 및 문화 진흥, 관광, 기타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재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낙도진흥계획은 종래에는 국가가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작성한 ‘낙도진흥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시정촌(市町村)이 계획안을 작성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이 계획을 수립
  - 각 지방자치단체가 낙도진흥계획에 기초하여 낙도진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 예산의 일괄 편성, 보조금 혜택, 세제상 특례, 특별용자제도 등 예산 지원 조치 등을 취해야 함

17) 김경신, 이주하. (2008). “일본의 도서관리 정책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 통권 제288호. p. 10-12.

## (2) 해양기본법

-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해양질서가 크게 개편되고 한국·중국 등 동중국해 해양영토 및 해양 관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자 「해양기본법」을 제정
- 이 법은 낙도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존의 낙도진흥법이 2013년에 종료되는 한시법이자 그 목적이 정주 여건의 개선에 맞추어져 있어 최근의 도서에 대한 가치와 해양의 종합적 이용·관리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해양기본계획에서는 도서관리에 대해 ‘도서자체의 보전·관리를 위한 대책’과 ‘도서의 정주기반 강화’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 낙도의 보전·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은 ① 해상 안전의 확보, ② 해양 자원의 개발·이용 지원, ③ 주변 해역 등의 자연 환경 보전, ④ 낙도의 보전·관리 대책 수립 등이 주요 골자임
  - 도서의 정주기반 강화를 위한 낙도진흥대책은 낙도진흥법에서 정한 내용과 대동소이함, ① 해양정책에서 정한 도서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한 정착·고용 촉진대책 추진, ② 교통기반의 정비·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의료체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정비, ③ 낙도 어민이 조업하는 어장의 생산력 향상, ④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낙도 관광진흥·도로 및 항만 등 사회자본 정비 추진 등이 주요 골자임

## 2) 그리스<sup>18)</sup>

### (1)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중점

- 섬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에 놓고, 인위적인 관광개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축물 등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제시책을 채택
- 산토리니섬의 색채는 흰색벽에 파란색 지붕이나 창문을 채택하여 전체적인 통일감과 시각적 심미성과 경관성을 극대화함

18) 문화체육관광부. (2008).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pp. 105-108.

## (2)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계획

- 중앙정부에서 섬 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과 숙박에 중요성을 둠
- 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
- 통신망 구축을 통해 섬의 본질적인 이격성과 접근성의 한계 극복

## (3)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원 향상 노력

- 호텔 등 숙박시설의 개보수 시, 사업성 검토를 전제로 국비 지원
-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원 제고

## (4) ISTOS 프로젝트 추진

- 2000년대 초 지역 관광발전 프로젝트인 ISTOS(Innovation for sustainable and services in the South Aegean 2000-2006)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EU와 그리스 내 각 지역간, 공동분야와 민간분야 간 협력촉진, 정보와 가치공유 등을 위해 제3공동체 지원체제의 일종인 RINO 네트워크를 구축
- 교통, 건강, 복지 등 기반시설 신축, 개보수 등에 대한 기본 인프라 정비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함

## 3) 이탈리아<sup>19)</sup>

### (1) 별도 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 섬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남부지역산업진흥공단 1986년에 설립
- 관련 업무
  - 사회기반시설 정비

19) 문화체육관광부. (2008).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pp. 105-108.

-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전
- 기존 및 신규개발지역의 시설 정비
- 지역생산품의 가격안정
- 중소기업 공동화 추진 및 기술자금 지원

## (2) 도서관광 진흥을 위한 특정지역 선정 및 정부지원

- 기업유치를 위한 설비투자 보조 및 저리 융자
- 수도요금의 경우 육지와 동일하게 책정 한 후 비용차액을 국가가 별도 부담 추진

## 4) 종합

- 도서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가 일원화되거나, 통합적 추진이 가능하여 다양한 연계사업들을 추진(생활여건 개선, 관광, 숙박, 자연환경 보전 등)
- 정부의 종합적 계획을 통한 장기적 정책 추진하며, 경우에 따라서 규제 정책 시행(그리스 건축물의 자연 경관과의 조화 유도)
- 도서개발 정책의 흐름을 보면 육지와 섬의 격차 해소 단계에서 섬의 특성화를 통한 소득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단계로 발전
- 섬 경관 보전 및 규제 등을 통한 어메니티 창출 노력
  - 섬이 보유하고 있는 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인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최소화하되,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
  - 자연적, 인문사회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섬의 자원은 관광자원화 하는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생태관광, 고품격 관광전략, 유기농 활성화 정책)
-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경주
  - 접근성 확보를 통해 섬을 관광 자원화시키며, 다양하고 질 높은 해상교통 수단 활용
  - 정보화 개선을 통해서 불편함 해소 노력

- 도서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하거나(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 건강 부문 등), 소득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마련(호텔 개보수, 중소기업 지원, 기업유치 지원 등)
  -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소득보전 및 향상을 위한 노력

#### 4. 정책 수요 조사

- 2005년에 인천광역시에서 도서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주민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서 관련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자 함<sup>20)</sup>
- 섬 생활개선 중 우선 개선해야 할 것으로 '건강/의료시설'이 28.5%로 가장 많았고, '교육/문화시설'이 18.9%, '도로/해운교통 확대' 17.7% 순서
  - 교육을 위한 개선 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 된 부분은 '교육 및 문화시설 확충'이었으며, 다음은 육지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다리와 해안 교통 등 '교통문제'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제반 교육환경 조성'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지난 10년간 어업 경영상황은 전체 1.4%만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65.1%가 '나빠졌다'고 응답해 어업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
  - 경영여건이 나빠진 이유는 '바다오염'이 43.6%로 가장 많았고, '해류 및 조류의 변화'(17.3%), '불법조업'(13.7%) 등이 다음을 잇고 있음
- 전체 73.1%가 10년 전과 비교해 섬 자연환경이 더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나아졌다'(매우 좋아졌다+좋아졌다)는 응답은 10.6%에 그치고 있음
  - 자연환경이 나빠진 원인으로는 육지 사람의 왕래(18.5%)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다음으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파괴(12.2%), 섬의 환경기초시설 부족(11.4%)을 지적함.
  - 보전해야 할 곳은 갯벌이 가장 많았고, 유적지, 바닷가/해안가 등의 순이었고, 이유는 전체적으로 '생태계 보호'와 '생계유지'가 많았음

20) 인천광역시. (2005). "주민의식조사", <도서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 5. 도서(섬)통계 항목 개발 및 분류

### 1) 기본방향

- 부족한 시·공간적 자료와 미흡한 자료의 세분화 보완
  - 개념 및 기준이 모호한 항목을 수정하여 신뢰도 제고
  - 도서통계DB 구현시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로서 가치 높임
- 도서통계의 정도(精度) 향상
  - 통계항목의 시간적 세분화에 있어서는 지역의 여러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설정된 항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현상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는가 등을 재검토해야 함
  - 기간의 동시성은 동일한 시점에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도서통계의 질적 개선
  - 통계의 생산에서 공급에 이르는 전 과정 개선을 통한 질적 개선 필요
  - 지자체에서의 통계관련 종사자의 통계업무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 향상도모
  - 자체조사, 행정업무자료, 외부조사자료가 지역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에 대한 개념, 기준, 항목, 조사방법, 조사대상 등에 관한 지침이나 지역통계발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자체 산하 연구소를 활용하여 도서통계 생산 체제 구축

### 2) 항목개발 및 분류

- 항목개발은 통계자료의 체계와 기존 통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구-입지-활동접근방법(Population-Location-Activities approach)에 가까운 시도 통계 항목 분류를 준거로 함
- 기존의 도서 통계항목 분석, 도서개발 주요 지표, 선진 외국의 도서개발 정책방향, 정책 수요 조사를 토대로 새롭게 항목 추가 및 분류 수정

- 기존 도서통계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 섬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는 행안부가 많이 보유한 반면 인구, 산업구조, 기반시설 및 자연환경에 관한 정보는 국토연구원과 비교하여 미비한 수준
  - 도서개발 진단지표에서 사업위주로 구분되어 체계적이지 못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도서개발을 위한 통계항목으로 사용되기에 부적절함
  - 주요 선진국의 도서개발 정책에서 인구 부문, 소득 창출 관련 사업체 및 섬 자원 정보 그리고 접근성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2005)의 도서 환경보전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조사에서 기반시설 확충(건강, 의료, 교육, 문화), 접근성(교통) 보장, 어업 경영과 관련한 오염문제 차단을 중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 요청됨
  - 이외에도 도서통계DB화를 고려할 시에 일반 통계항목 이외에 도형데이터(기본도, 주제도, 기타: 그래픽, 이미지, 음향 등)의 항목이 필요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시도 통계연보의 통계항목 중에서 도서통계와 관계있는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전기·가스·수도, 주택·건설,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소득 및 지출 13개 항목으로 구분
- 시도 통계연보의 (세부)항목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서 토지 및 기후항목의 '부속무인도수, 도서형태', 인구항목의 '종교',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항목의 '연육 및 연도 수, 육지도달 소요시간, 숙박시설, 위락시설, 도서체험시설, 해양레포츠 시설', 보건 및 사회보장항목의 '건강악화로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환경항목의 '갯벌, 천연기념물, 육상환경, 해양환경', 교육 및 문화항목의 '개발가능 역사자원, 민속자원' 등을 추가
- 인구항목에서 '종교, 혼인상태별 인구, 인구이동, 상주(야간)/주간 인구'와 보건 및 사회보장항목의 '건강악화로 인한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는 스코틀랜드의 도서통계 항목에서도 강조됨

- 도서 지역의 어메니티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환경항목에서 자연자원 관련 항목을 육상과 해양으로 구분추가
  - 환경항목에서 새롭게 추가된 자연환경 관련사항은 인천광역시의 연구에서 강조
  - 육상의 경우 지형, 지질 환경, 식물 식생(출현종, 분포 특징), 동물상(출현종, 분포 특징)
  - 해양의 경우 영양염류(총질소, 총인 등), 부유물질 함량, 엽록소, COD, 용존산소, 투명도, 해양식생물, 해양동물
  
- 정책 수요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어업 경영은 물론 지역 경제 여건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 관련 사항을 환경항목에 추가
  - 해안 모래 유실, 채석장 방치, 난개발 등
  - 수산자원 감소 등의 오염의 결과에 해당하는 항목 추가
  
- 이외의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항목의 '숙박 및 시설'관련 사항과 토지 및 기후항목의 '도서형태'는 행안부의 도서개발 진단지표에서도 강조

**<표 24> 도서통계 항목 개발 및 분류(안)**

항목	세부항목
토지 및 기후	·위치(경도, 위도, 거리) ·행정구역(구역, 지번, 면적, <b>부속무인도수</b> , 해안선길이) · <b>도서형태(육지근접, 군도, 고립/무인, 유인)</b> ·토지소유현황 ·토지지목별 현황 ·일기일수 ·기상개황
인구	·연령별 및 성별 인구 · <b>종교</b> · <b>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인구)</b>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인구)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인구동태(성별 출생률, 사망률) · <b>인구이동(전입, 전출)</b> ·통근/통학 유형별 인구(12세 이상) · <b>상주(야간)/주간 인구</b> ·주요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 ·외국인 국적별 혼인 인구 ·혼인종류 및 외국인 국적별 혼인
노동	·경제활동인구총괄 ·연령별 취업자 ·교육정도별 취업자

항목	세부항목
	·산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
사업체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총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농림수산업	·농가 및 농가인구 ·연령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경지규모별 농가 수 ·식량작물 생산량 ·채소류 생산량 ·특용작물 생산량 ·과실류 생산량 ·소유별 임야면적 ·임상별 산림면적 ·임산물 생산량 ·조림 ·어가 및 어가인구 ·어선 보유 ·어항 ·수산물 어획고 ·수산물 가공품 생산고 ·수산물 계통 판매고 ·화훼류 재배 현황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광업 및 제조업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 ·광종별 광구 수 ·광산물 생산 ·석유류 소비량
전기·가스·수도	·발전 현황 ·용도별 전력사용량 ·상수도 ·상수도 관 ·급수사용량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하수관거
주택·건설	·주택의 종류 ·공원 ·하천 ·도로 ·도로시설물 ·교량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자동차 등록 ·영업용 자동차 업종별 수송 ·여객선 수송 ·해운화물 수송 ·연육 및 연도 수 ·육지도달 소요시간 ·숙박시설 ·위락시설 ·도서체험시설 ·해양레포츠시설

항목	세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관광지 방문객수</li> <li>·지정(법정) 관광지 현황 및 방문객수</li> <li>·전화시설 및 가입자수</li> <li>·전산장비보유</li> </ul>
보건 및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기관</li> <li>·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li> <li>·보건소 인력</li> <li>·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li> <li>·식품위생관계업소</li> <li>·공중위생관계업소</li> <li>·예방접종</li> <li>·법정 전염병 발생 및 사망</li> <li>·<b>건강악화로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고령자, 경제활동인구 구분)</b></li> <li>·건강보험 적용인구</li> <li>·건강보험급여</li> <li>·국민연금 가입자</li> <li>·국민연금 급여지급현황</li> <li>·사회복지시설</li> <li>·노인복지시설</li> <li>·여성복지시설</li> <li>·장애인복지시설</li> <li>·저소득 모/부자가정</li> <li>·모지 및 납골시설</li> <li>·방문보건사업실적</li> <li>·보육시설</li> </ul>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갯벌</li> <li>·동식물군락</li> <li>·천연기념물</li> <li>·육상(지형, 지질, 식물, 동물)</li> <li>·해양(영양염류, 부유물질, COD, 투명도, 식물, 동물)</li> <li>·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li> <li>·환경오염배출시설단속 및 행정조치</li> <li>·대기오염</li> <li>·쓰레기 수거</li> <li>·생활폐기물 매립지</li> <li>·하수 및 분로발생량 및 처리현황</li> <li>·하수종말처리장</li> <li>·수질오염</li> <li>·해안 모래 유실</li> <li>·채석장 방치</li> <li>·난개발</li> <li>·수산자원 감소</li> </ul>
교육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총 개황</li> <li>·유치원</li> <li>·초등학교</li> <li>·기타 학교</li> <li>·적령아동 취학</li> <li>·박물관(전시장)</li> <li>·문화재</li> <li>·<b>개발가능 역사자원(사건, 인물)</b></li> <li>·민속자원</li> <li>·문화공간</li> <li>·체육시설</li> </ul>
소득 및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생산 및 지출총괄</li> <li>·경제활동별 시내총생산</li> <li>·총생산에 대한 지출</li> </ul>

## 제4장 도서(섬)통계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 1. 도서(섬)통계 관리체계 구축 방안

#### 1) 기본방향

- 부처(청)의 지역 혹은 사업에 대한 관리를 위한 도서(섬)통계 관리체계 구축을 지양하고 많은 다양한 국민 혹은 관계자들의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지향
- 관련 부처·청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중복적 자료수집을 통한 비용절감과 질적 높은 자료 활용 기반 마련
- 지자체의 통계조직 및 인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은 물론 활용성 제고 그리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제고<sup>21)</sup>
- 도서(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보다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정·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 도서(섬) 통계항목의 양적 확대(가공자료 포함)와 질적으로 향상된 자료 수집방법의 지속적인 연구 지원

#### 2) 관리체계(안)

- 지방정부의 재원,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의 조화 추구를 통한 도서통계의 생산체계 개선
  - 광역시·도간 및 하위 지자체의 통계업무를 비롯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분석과 표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도서통계에서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특수 항목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기준으로 표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관련 서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문서의 표준화를 도모

21) 최봉호. (2006). “지역통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pp. 29-39.

○ 도서통계의 종합적 관리체제 구축

- 지역통계의 대부분이 보고통계인 상황 하에서 통계의 종합적 관리는 단순한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통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
- 정보화가 행정업무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에는 지역 통계는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통계정보를 체계화하고 종합 관리하여 공동 활용하는 통계정보망이 필요
- <그림 3>에서 보듯이 도서(섬) 업무를 맡은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해당조직은 물론 관련 조직(전산실)과 협조하는 조직체계 구축
- 타 부처의 지방통계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의 전단계로서 도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체계화하여 구축
- 단계적으로 통계청과 농림부 등의 지방통계사무소 등과도 연계하여 현재의 지자체 통계조직의 열악한 수준을 극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통계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 조직단위별 관리해야할 통계단위(항목)는 기본적으로 해당 조직의 업무에 근거하여 해당 통계단위(항목)를 관리하며, 이외에 필요한 통계단위(항목)에 대해서는 관련한 기관(조직)과 협력하여 활용

○ 도서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도서관련 행정자료에 대하여 사업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1년 주기로 자료를 수집함을 원칙으로 함

- 조직체계에서 오른쪽 부분은 1년 이내에 관련 업무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통계자료가 수집되어 보고되도록 함
- 왼쪽 부분은 1년 주기로 수집되는 통계자료인 경우에 해당됨
- 항목에 따라 일부 자료수집 주기가 달라질 수 있음(기후의 경우 매 시간 자료 획득 가능)

○ 자료수집방법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통계와 일부 지역에 생성될 수 있는 지역특화 통계를 구분<sup>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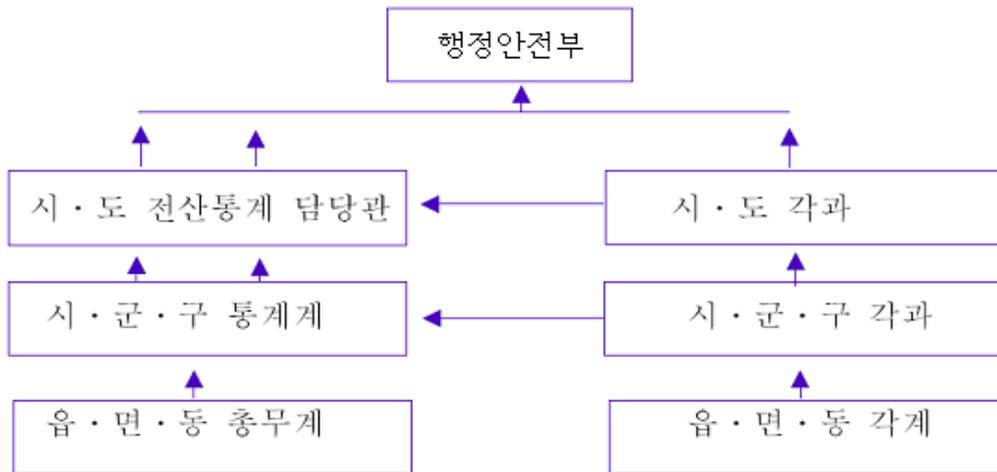
- 기본통계의 경우 표본조사에 의한 방법보다 각종 전수조사의 성격을

22) 최봉호. (2006). “지역통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pp. 29-39.

갖는 행정자료를 이용함

- 지역특화 통계의 경우 지자체 혹은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함
- 기존에 개발 운영되어온 지역특화 통계의 경우 중앙의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를 행정DB화하여 다른 기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그림 3> 도서(섬) 통계 관리 조직체계



자료: 윤태범. (1998). “우리나라 지역통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통계분석 연구>, 제3권 제1호. pp. 105-130. 재인용

## 2. 도서(섬)통계 DB화 방안

- 도서(섬)통계 DB는 사용자 요구 분석, 데이터 현황 파악, Web-GIS 시스템 설계, DB구축, Web-GIS 시스템 구축, Web-GIS 운영 방안 구축의 순서를 따름<sup>23)</sup>
  - ※ 일방향적 순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순서를 달리할 수 있음
- 사용자 요구 분석은 국내·외 구축 사례조사와 사용자(공무원, 국민, 기타 관계자 등)의 편의성을 고려한 구축 방안 모색
  - 공무원, 주민, 도서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인천시(2005)의 경우 이러한 조사 수행

23) 인천시. (2005). “인천 도서 해양 GIS 구축 및 운영 방안”, <도서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 도서 관련 주요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조사할 필요성 제기
- 국토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Lmis.moct.go.kr), 부동산정보통합포탈([www.onnara.go.kr](http://www.onnara.go.kr)), 산업입지정보시스템(industryland.or.kr), 국토공간 계획지원체계([www.kopss.go.kr](http://www.kopss.go.kr)), 갯벌정보시스템([www.tidalflat.go.kr](http://www.tidalflat.go.kr)), 연안포탈([www.coast.kr](http://www.coast.kr)),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ct.go.kr), 건축행정시스템([www.eais.go.kr](http://www.eais.go.kr)), 부동산거래관 리시스템(rtms.moct.go.kr), 국가지리정보유통([www.mgic.go.kr](http://www.mgic.go.kr))
- 농림식품부의 농지종합정보시스템(fis.karico.co.kr), 환경부의 환경지리 정보시스템(egis.me.go.kr), 산림청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forest.go.kr), 문화재청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cha.go.kr), 농촌진흥청의 농촌토양 정보시스템(asis.rda.go.kr)
- 데이터 현황 파악은 DB 및 수치지도 보유 기관 및 입수 방안 파악하 고, 세부 수치지도 입수 방안 등을 파악
- Web-DB시스템 설계는 DB 설계, Server 설계, GUI 설계로 구분하여 통 합·연계하여 수행
- DB구축은 도형데이터, 속성데이터, 기타 데이터를 입수 및 customizing, 데이터 최적화 등을 수행함
  - 도형데이터는 크게 기본도, 주제도로 구분되며, 기본도는 정부의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립지리원 등에서 제작·상용화한 수 치지형도 사용
  - 주제도는 지번도, 토지이용현황도, 위성영상데이터 등을 사용
  - 속성데이터는 앞서 선정한 도서(섬) 통계 항목을 사용
  - 기타 데이터로서 문자, 그래픽, 이미지, 사진 등의 여러 미디어를 동시 에 사용하며,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멀티미디어 환경 제공
- Web-GIS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GUI 디자인과 초기 화면, 검색 화면 등을 구축함<sup>24)25)</sup>
  - 지역별 이동 및 정보검색 기능
  - 도서별 이동 및 정보검색 기능
  - 자료의 관리
  - 도서종합정보검색 기능

24) 박민호, 광성남. (2000). “GSIS를 이용한 도서(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측량학회지>pp. 211-219.

25) 자치정보화조합. (2004). <지역정보화 통계기반 구축>.

- 정보의 수정 기능
- 도서 관련기관 정보검색 기능
- 도서 소개 및 지도범례기능
- 공간분석 기능
- Web-GIS의 지속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시스템 추가 개발, 정보 보안 기능 개발, 콘텐츠 확보와 정보의 갱신, 운영자 교육 및 지역 서버와 연동 등을 수행

### 3. 도서(섬)통계 활용 방안

#### 1) 활용 촉진 방안

- 최신 정보, 좋은 정보, 사용자 친화적 정보 제공, 시스템의 홍보력 등이 활용 촉진의 근간이 됨
  - 사용자 친화적 정보 제공은 시스템 설계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시스템의 홍보력은 행정안전부와 같은 접속이 잦은 곳에서 노출 강화
  - 최신 정보와 좋은 정보는 도서통계의 생성과 활용과 직접 관계되어 전문적인 인력과 관리체제로 가능함
- 도서통계DB 시스템 설계시 사용자들의 Web 접근정보에서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에 따라 어떤 자료를 검색하는지 등에 대한 자료생성과 이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자료의 새로운 생성과 메뉴 재구성을 통한 GUI를 최적화
- 정책적 활용사례 제공, 학습자료 제공과 홍보(논문공모 등) 그리고 재미있는 주제의 검색자료 제공 등 운영관리
- 시민 통계자료 모니터링, 시민전문가, 민간부문 도서통계 관련 정보 검색 등을 통한 지속적 운영관리가 되도록 협력적 체계 구축

#### 2) 활용 기대효과

- 국가적 자원으로서의 도서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과 국토개발

## 기반 마련

- 도서 지역의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됨
  - 도서 관련 계획, 정책 운영의 자료로 활용되어 효율적 운영 제고
- 도서(섬)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 지원<sup>26)</sup>
- 시계열 자료, 지역간 비교 등의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정책계획 설정
  - 관련 정보를 근거로 지역 특성화에 기반한 도서 개발 가능성 확대
  - 정책의 성과 및 환류 정보를 통한 향후 정책방향 제고
- 국민(주민)의 정책적 참여기회 확대와 편의성 증대
- 도서(섬) 관련 정치·행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도서통계DB를 통한 정보공유는 기관 간, 정책관계자 간의 갈등 완화
  - 국민(주민)의 이해 도모와 함께 자연 보호, 친환경 도서관리에 기여
  - 도서 방문객들의 도서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일반인들의 교육자료 제공
- 도서 관련 정보의 체계적 갱신 및 관리
- 도서(섬)DB화를 통한 주기별 도서 정보의 효율적 갱신 가능
  - 제반 도서 관련 정보의 집약적이고 체계적 관리 가능

## 제5장 결론

- 도서(섬)은 국토공간, 해양휴식공간으로서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도서통계 관리체계 미구축은 물론 질적·양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통계자료 생성 및 활용이 부진한 실정
- 이러한 문제 중에서 도서통계 항목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도서통계 항목, 도서개발 주요 지표, 선진 외국의 도서개발정책 및 정책 수요조사에

26) 인천시. (2005). “인천 도서 해양 GIS 구축 및 운영 방안”, <도서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참조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항목과 분류체계 구축

- 통계자료의 체계적 생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 통계연보에서 제시하는 항목과 분류체계 준거
-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정책적 수요사항이 있는 인구, 교통, 관광, 보건, 환경 및 문화 관련 항목 추가

○ 도서통계 관리체계 구축은 기본적으로 관련 부처, 지자체 및 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통계조직 및 인력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속적인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도서지역의 공통된 사항을 다루는 기본통계는 물론 지역특화 도서통계를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성·활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
- 정기적 통계자료와 수시 통계자료가 원활하게 생성·활용될 수 있는 체계 갖춰져야 함

○ 도서통계DB화 방안은 사용자 요구분석, 데이터 현황 파악, 시스템 설계, DB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방안 구축 등의 절차에 따라 구축되어야 함

- 정책수요 및 사용자 요구 분석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함
- 기존의 도서통계DB의 데이터 항목, 분류 및 GUI 검토를 통하여 중복 항목 개발을 피하고 차별화된 항목을 추가 개발하는 방안 필요
-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서통계DB 완성도 높임

○ 도서통계의 활용을 통하여 국가계획, 정책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국민의 정책적 참여기회 확대와 알권리에 대한 충족은 물론 도서담당자의 체계적 정보 갱신 및 관리가 가능

○ 도서통계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서통계DB 시스템 설계시 사용자들의 Web 접근정보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메뉴 재구성과 GUI를 최적화시키고, 학습자료와 홍보(논문공모 등), 재미있는 주제의 검색자료 제공 등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

## 【참고문헌】

### □ 문헌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국토연구원. (1996). <도서지역의 유형별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 김경신 · 이주하. (2008). “일본의 도서관리 정책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 통권 제288호. p. 10-12.
- 문화관광부. (2006).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연구>. pp. 19-21.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pp. 21-23.
- 박민호 · 광성남. (2000). “GSIS를 이용한 도서(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측량학회지>. pp. 211-219.
- 윤태범. (1998). “우리나라 지역통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통계 분석연구>, 제3권 제1호. pp. 105-130. 재인용
- 이장희. (2005). “국제법상 섬과 암석의 차이”, <제1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발표집>.
- 인천광역시. (2005). “주민의식조사”, <도서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 · 관리계획 수립>
- 자치정보화조합. (2004). <지역정보화 통계기반 구축>.
- 최봉호. (2006). “지역통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pp. 29-39.
- 통계청. (2005). <한국통계연감>
- 행정안전부. (2008). <도서진단체도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 pp. 50-103
- 해양수산부. (2004), 해양관광진흥 세부실천계획(안)

### □ 국가계획 및 법·제도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도서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1982)
-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초안
- 자연공원법
- 해운법

□ 정보시스템

- 갯벌정보시스템([www.tidalflat.go.kr](http://www.tidalflat.go.kr))
- 건축행정시스템([www.eais.go.kr](http://www.eais.go.kr))
- 국가지리정보유통([www.mgic.go.kr](http://www.mgic.go.kr))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www.kopss.go.kr](http://www.kopss.go.kr))
- 농지종합정보시스템([fis.karico.co.kr](http://fis.karico.co.kr))
- 농촌토양정보시스템([asis.rda.go.kr](http://asis.rda.go.kr))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cha.go.kr](http://gis.cha.go.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http://rtms.moct.go.kr))
-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http://www.onnara.go.kr))
-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forest.go.kr](http://fgis.forest.go.kr))
- 산업입지정보시스템([industryland.or.kr](http://industryland.or.kr))
- 연안포털([www.coast.kr](http://www.coast.kr))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oct.go.kr](http://luris.moct.go.kr))
- 한국토지정보시스템([Lmis.moct.go.kr](http://Lmis.moct.go.kr))
- 환경지리정보시스템([egis.me.go.kr](http://egis.me.go.kr))

## 【부록 1】 도서(섬) 관련 법령

### 1. 도서개발촉진법

#### 島嶼開發促進法

第1條(目的) 이 법은 島嶼의 生産·所得 및 生活基盤施設의 整備·확충으로 生活環境을 개선함으로써 島嶼住民의 所得增大와 福祉向上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島嶼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島嶼는 濟州道本島를 제외한 海上의 全島嶼를 말한다.

第3條(다른 計劃과의 관계) ①이 법에 의한 開發計劃은 다른 法令에 의한 開發計劃에 우선한다. 다만, 軍事, 국토기본법·國土利用管理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2.4>

②이 법에 의한 開發計劃은 다른 法令에 의한 開發計劃과 連繫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第4條(開發對象島嶼의 指定) ①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島嶼를 開發對象島嶼(이하 "指定島嶼"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第1項의 指定島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申請에 의하여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8.31, 2008.2.29>

第5條(指定島嶼의 告示) 행정안전부장관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島嶼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2008.2.29>

1. 開發目標
2. 開發島嶼 및 開發事業의 範圍
3. 開發事業의 概要
4. 開發事業의 施行期間

第6條(事業計劃의 수립) ① 指定島嶼를 관할하는 市·道知事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指針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9.8.31, 2008.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住民所得增大와 生活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住居環境 및 施設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産業振興과 資源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基盤施設設置에 관한 사항
3. 島嶼의 交通·通信便益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運送 및 交通手段과 通信施設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風·水害 및 災害등의 防災를 위하여 필요한 防波堤·防潮堤施設과 治山綠化등 國土保全에 관한 사항
5. 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教育·厚生·醫療·文化 및 電氣施設의 設置·개선에 관한 사항
6. 島嶼地域의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7. 生活必需品의 원활한 流通·供給을 위한 지원·補助등에 관한 사항
8. 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에 관한 사항
9. 기타 島嶼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第7條(事業計劃의 확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島嶼開發審議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務總理에게 보고하고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事業計劃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당해 市·道知事が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8.31]

第8條(年度別 事業計劃의 확정<개정 1999.8.31>) ① 관계 市·道知事は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事業計劃에 따라 매년 다음 年度 事業計劃(이하 "年度別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을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1999.8.31, 2008.2.29>

第9條(事業의 施行者) ①指定島嶼의 事業施行者는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が 지정하는 者로 한다.<개정 1999.8.31>

②第1項의 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다른 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기타의 者에게 開發事業을 委託할 수 있다.

第10條(事業費의 造成)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計劃을 추진하기 위하여 事業施行者에게 필요한 資金을 補助·融資 또는 貸與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의 補助比率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豫算에의 計上)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業計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費를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12條(다른 關係規定등에 관한 措置)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島嶼地域내의 土地 또는 水面을 事業計劃이 정하는 用途에 제공하기 위하여 事業施行者가 關係法律에 따라 許可 또는 處分등을 申請한 경우에는 특별한 理由가 없는 한 그 指定島嶼의 開發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3條(稅制上의 支援) 政府는 事業計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支援를 할 수 있다.

第14條(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設置) ①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8.31, 2008.2.29>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島嶼의 지정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작성을 위한 指針과 基準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

4.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 委員長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개정 1999.8.31, 2008.2.29>

④委員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次官·廳長 및 高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과 島嶼분야등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개정 1999.8.31, 2005.12.29>

⑤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意見陳述과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⑥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삭제<1999.8.31>

附則 <제3923호,198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삭제<1995.12.30>

附則 <제5125호,19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6001호,1999.8.3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국토기본법) <제6654호,200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國土建設綜合計劃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5생략

②6 島嶼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級 이상 國家公務員"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7내지 ②8생략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00까지 생략

②01 島嶼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行政自治部長官”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行政自治部”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02부터 ②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절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② 종합관리계획은 제8조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③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등
  3.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4.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5.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8.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누구든지 관할 구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 후단,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7조(특별관리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무인도서관리위원회) ①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무인도서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2.29>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무인도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인
2.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3. 무인도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4.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그 밖에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5.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림·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시험림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

#### 제1절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무인도서의 위치·면적 및 육지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사유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절 무인도서의 보전

제12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증·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동·식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7. 야생동·식물을 포획·살생·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질·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야생동·식물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①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야생동·식물보호법」·「자연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4조(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3절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

- 제15조(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해양레저활동
  2. 관광을 목적으로 한 탐방행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태교육
  3. 여가활동의 일환으로서 야생동·식물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4.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용 또는 사용
  5.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행사 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무인도서의 형

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승인·인가 등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신고·협의
7.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고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1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

인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설치 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7.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절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인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제4장 보칙

- 제20조(중지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21조(무인도서의 점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용자·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3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③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관할 시·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이용·개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그 밖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6조(무인도서조사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무인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명예관리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명예관리원의 자격·위촉방법·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제16조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9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무인도서 증감 현황
2.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무인도서 현황
3. 개발사업계획 승인 현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0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①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

으로 본다.

##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①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3.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 자
5.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방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620호,2007.8.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무인도서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 안에서 개발계획에 관한 허가·승인·신고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이 있거나 허가등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허가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는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본다.
-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절대보전무인도서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준보전무인도서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이용가능무인도서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㉖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第1條(目的) 이 법은 特定島嶼의 다양한 自然生態系·地形 또는 地質등을 비롯한 自然環境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國民 모두가 깨끗한 自然環境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12.30>

1. "特定島嶼"라 함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自然生態系·地形·地質·自然環境(이하 "自然生態系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獨島등 環境部長官이 지정하여 告示하는 島嶼를 말한다.
2. "自然生態系"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生物共同體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無機的 環境이 結合된 物質界 또는 機能界를 말하며, 화석·종유석등과 같이 퇴적·풍화·용해작용이나 화산활동등에 의하여 自然的으로 生成된 物質을 포함한다.

第3條(적용범위) 이 법은 獨島등 大韓民國의 主權이 미치는 特定島嶼의 自然生態系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4條(特定島嶼의 지정등) ①環境部長官은 特定島嶼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島嶼중에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管轄 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特定島嶼의 指정을 解除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30>

1.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등 自然景觀이 뛰어난 島嶼
2. 水資源·化石,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固有의 生物種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島嶼
3. 야생동물의 棲息地 또는 도래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島嶼
4. 自然林地域으로서 生態學的으로 중요한 島嶼
5. 地形 또는 地質이 특이하여 學術的 研究 또는 보전이 필요한 島嶼
6. 기타 自然生態系등의 보전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 島嶼

②環境部長官은 特定島嶼를 지정하거나 解除·변경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島嶼의 명칭·區域·면적·指定年月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特定島嶼의 지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解除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다.

1. 軍事상 또는 公益상 불가피한 경우와 天災地變 기타 사유로 特定島嶼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2. 指定目的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5條(特定島嶼保全基本計劃) ①環境部長官은 特定島嶼의 自然生態系등의 보전을 위하여 10年마다 特定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개정 2002.12.30, 2003.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自然生態系등의 보전에 관한 基本方向
2. 自然生態系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방법,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基礎調査) ①環境部長官은 特定도서를 지정하거나 基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無人도서(無人島嶼)등의 自然生態系등에 대한 基礎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②環境部長官은 特定島嶼의 環境變化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島嶼에 대하여는 精密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7.5.17><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7.5.17>

④第1項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7.5.17><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7.5.17>

⑤環境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07.5.17>

제6조의2(도서조사원) ①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중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조사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6조의3(명예감시원)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第7條(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環境部長官은 島嶼의 自然生態系등의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土石 기타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文化財(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된 島嶼안에서는 文化財廳長 또는 市·道知事와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뜨기전·해진뒤에는 당해 토지 占有者의 승낙 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8條(행위제한) ①누구든지 特定島嶼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軍事·航海·遭難救護行爲, 天災地變등 災害發生으로 인하여 그 防災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國家가 施

行하는 海洋資源開發行爲, 島嶼開發促進法 第6條第3項의 事業計劃에 의한 開發行爲 및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文化財廳長 또는 市·道知事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2003.12.30, 2004.2.9>

1. 建築物·工作物の 신축·증축
2. 開墾·埋立·浚渫 또는 干拓
3. 宅地の 造成·토지의 形質變更·토지의 分割
4. 公有水面의 埋立
5. 立木·竹의 伐採 또는 훼손
6.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開發
7. 가축의 放牧, 야생동물의 捕獲·살생 또는 그 알의 採取, 야생식물의 採取
8. 도로의 新設
9. 特定島嶼에 棲息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特定島嶼안에 존재하는 自然的 生成物을 그 섬 밖으로 搬出하는 행위
10. 特定島嶼안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교란야생동·식물을 搬入하는 행위
11. 폐기물을 埋立 또는 투기하는 행위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 地質·地形·自然的 生成物の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는 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신고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條(許可) ①環境部長官은 特定島嶼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許可할 수 있다. 다만,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文化財로 지정된 島嶼에 대하여는 미리 文化財廳長 또는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등산로·산책로·도로·공중변소 및 정자등을 設置하는 行爲
2. 自然生態系등의 연구·조사를 目的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建築物·工作物の 補修·改築
4. 기타 自然生態系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變形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環境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나

期限을 붙일 수 있다.

第10條(出入禁止등) ①環境部長官은 特定島嶼의 보호·육성 또는 훼손된 自然生態系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特定島嶼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지역에의 出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島嶼住民이 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軍事·航海·遭難救護 目的상 또는 天災地變등 災害의 발생으로 그 防災에 필요한 措置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自然生態系등의 調査를 위하여 環境部長官으로부터 許可를 받은 경우 및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文化財廳長 또는 市·道知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出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②環境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解除하고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11條(原狀回復命令등) 環境部長官은 特定島嶼안에서 제8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 또는 原狀回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5.17>

第12條(法令違反에 대한 처분)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取消하거나 행위를 정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자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토지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07.5.17>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0]

제12조의3(시·도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특정도서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를 시·도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도서의 명칭·위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내지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0]

第13條(權限의 위임·委託)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環境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第14條(罰則)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項 各號의 1에 規定된 行위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5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1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調査行爲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島嶼를 出入한 者
4.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告知된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意를 提起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意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意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447호,19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關係法令에 의하여 第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適法하게 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㉞생략

㉞獨島등島嶼地域의生態係保全에 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但書, 第8條第1項 本文, 第9條第1項 本文 및 第10條第1項중 "文化體育部長官"을 "文化財廳長"으로 한다.

㉟생략

第4條 및 第5條 생략

第6條(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를,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 또는 豫算廳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소속公務員을, 公報室 또는 海外弘報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를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를, 公報室長 또는 文化觀光部長官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長을, 公報室 또는 文化觀光部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소속公務員을, 文化財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을,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文化財管理局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을,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소속 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소속 公務員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의견을 들은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協議한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7019호,200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동·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獨島등島嶼地域의生態系保全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自然環境保全法 第2條第18號의 規定에 의한 생태계위  
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생태계교  
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8465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教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教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

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第6條 삭제<1981.12.31>

附則 <제1870호,1967.1.16>

이 法은 1967年 1月 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제3499호,198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島嶼·僻地地域은 이에 대한 文敎部令이 制定 施行될 때까지는 종전의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 島嶼·僻地地域으로 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文敎部の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 島嶼·僻地敎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중"文敎部令"을 "敎育部令"으로 한다.

⑥내지 ⑩省略

第5條 내지 第10條 省略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도서·벽지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教育部令"을 "教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한다.

⑭내지 ⑲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70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록 2】 인천시 도서(섬) 현황 조사·분석계획<sup>27)</sup>

### 1. 인문·사회환경 조사

- 1) 도서의 일반적인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GIS/DB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사대상 : 155개 유·무인 도서
- 3) 조사항목
  - 물리환경 : 도서의 위치, 면적, 해안선 길이, 토지현황
  - 인문환경 : 인구, 역사, 문화, 유·무형문화재(잠재적 문화재 포함)
  - 사회환경 : 경제구조, 교통, 공공시설(도로, 어항, 급수, 교육, 의료, 전기·통신시설 등)
  - 토지이용 : 토지소유형태, 개발·이용현황(계획 포함)
  - 생활환경 : 폐기물·분뇨 발생, 환경기초시설 설치현황
- 4) 조사방법
  - 통계, 문헌 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 파악 후 1회 이상 현장조사와 주민·공무원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작성한다.
  - 중요 항목의 분포 위치는 GIS 구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 2. 수산현황 조사

- 1) 인천연안에서 출현하는 해산어류 및 유용수산 무척추동물에 대한 종 목록을 작성하여 수산자원 어종의 변화양상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사대상 : 유인도서 및 주변해역
- 3) 조사항목
  - 출현어종, 유용수산 무척추동물
  - 어로형태 및 수산물 이용 및 양식장 현황
- 4) 조사방법
  - 통계, 문헌 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 파악 후 1회 이상 현지조사와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 출현하는 모든 종 목록을 계통분류학적 체계에 근거하여 정리하고, 양

27) 인천광역시. (2005). “도서해양환경 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 과업지시서” 참조(물관리과 담당).

식장, 우점종, 희귀종, 보호대상종 등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양식장 현황조사는 무인도를 포함한다.

### 3. 지형·지질·경관 조사

1. 인천연안의 지형·지질·경관 분포도와 등급도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GIS/DB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대상 : 155개 유·무인 도서
  - 중점조사 : 30개 도서(강화·교동·석모·불음·주문·말·아차·영종·용유·대무의·소무의·장봉·신·시·영흥·선재·자월·승봉·대이작·소이작·덕적·백아·울·굴업·문갑·대연평·소연평·백령·대청·소청도)
  - 일반조사 : 중점조사대상외 125개 도서
3. 조사항목
  - 일반조사대상 도서는 면사상도 점사상으로 일괄적으로 조사하며, 특히 지형·지질·경관은 정밀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지형·지질·경관 조사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단 위 지 형	정밀	일반
지형	해안 지형	면(Polygon) 사상	간석지 또는 갯벌(Tidal flat)	○	○
			염습지 또는 염생습지(Salt marsh)	○	○
			모래 해안(Sand beach)		○
			자갈 해안(Shingle beach)		○
			암석 해안(Rocky coast)		○
			연안 사주(Barrier islands or bars)		○
			육계사주와 육계도(Tombolo and Land-tied island)		○
			사취(Sand spit)		○
			비치리즈(Beach Ridge)		○
			범(Berm)		○
			해안사구(Coastal dune)	○	○
			파식대(Wave-cut platform)		○
			해안단구(Marine terrace)		○
			석호(Lagoon)	○	○
			배후습지(Marshes)	○	○
			해안평야(Coastal plain)		○
			인공해안(간척지 등)		○
			기타		○
지형	해안 지형	점(Point) 사상	노치(Notch)		○
			파식주(Sea stack)		○
			마린포트홀(Marine pothole)		○
			타포니(Tafoni)		○
			해식애(Sea Cliff)		○
			해식동(Sea Cave)		○
			해식아치(Sea Arch)		○
			연흔(Ripple mark)		○
			주상절리(Culumnar Joint)		○
			기타		○
	육상 지형	면(Polygon) 사상	환경부 자연환경 조사지침에 의함		○
		점(Point) 사상	환경부 자연환경 조사지침에 의함		○
지질	일반 지질	면(Polygon) 사상	기존 지질도를 통하여 기반암을 구성하고 있는 암상을 표현		○
		점(Point) 사상	보존가치가 있는 화석이나 단층, 습곡 등 특이한 지질구조 및 특수한 암상의 분포	○	○
경관	자연 경관	점(Point) 사상	심미적 경관		○
			특이한 자연현상		○
	인문 경관	점(Point) 사상	역사경관		○
			문화경관		○

#### 4) 조사방법

- 현장조사 또는 문헌자료, 주민 면접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 중점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1회 이상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문헌 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 파악 후 1회 이상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조사 대상도서에 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일반적으로 출현하는 단위 지형은 환경부 지형경관조사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간석지나 해안사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밀조사표 작성한다.
- 지형지질경관 분포도와 등급도를 작성하며, 분포 위치는 GIS/DB를 위하여 GPS로 측정된 좌표를 기재한다.

#### 4. 해역의 조류·조석 조사

- 1) 조석의 변화 등 조류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 2) 조사대상 : 41개 유인 도서 및 주변해역
- 3) 조사항목 : 조류 및 조석변화에 따른 창조류와 낙조류의 유속·유향
- 4) 조사방법 :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자료, 인천주변 9개 항구 조석예보 자료를 이용하여 조석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 5. 도서육상 식물 조사

- 1) 식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종의 출현정도와 개체수가 가장 풍부한 계절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GIS/DB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사대상 : 155개 유·무인 도서
  - 중점조사 : 15개 도서(교동·석모·불음·주문·아차·영흥·선재·승봉·덕적·백아·울·굴업·대연평·백령·대청도)
  - 일반조사 : 중점조사대상외 140개 도서
- 3) 조사항목
  - 육상식물상 및 해안식물의 종 분포현황
  - 법정보호식물, 특산식물, 희귀식물, 귀화식물 등 특징식물 및 군락
  - 주요 분포지의 식생구조 및 문제점 파악

#### 4) 조사방법

- 현장조사 또는 문헌연구, 주민면접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채집하여 동정할 수 있다.
- 중점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2계절 이상 현장 조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문헌 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 파악 후 1회 이상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조사 대상도서에 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특징식물 등의 분포 위치는 GIS/DB화를 위하여 GPS로 측정된 좌표를 기재한다.

### 6. 도서육상 식생 조사

1) 식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종의 출현정도와 개체수가 가장 풍부한 계절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GIS/DB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대상 : 155개 유·무인 도서

- 중점조사 : 12개 도서(강화남단·교동·석모·주문·영종·용유·대무의·장봉·신·영흥·선재·덕적)
- 일반조사 : 중점조사대상외 143개 도서

3) 조사항목

- 우점종, 식별종을 구분하여 식생단위 분류
- 계층별 종목록 분포현황
- 주요 분포지의 식생구조 및 문제점 파악

4) 조사방법

- 계층별 출현종에 대한 식생조사표를 작성하고, 피도·군도를 측정 기록하여야 하며, 식생과 상관에 의한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현존식생도를 작성한다.
- 현장조사 또는 문헌연구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며, 중점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2계절 이상 현장 조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문헌 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 파악 후 1회 이상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조사 대상도서에 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국립지리원 발행 1:25,000 지형도와 1:5,000 지형도, 1:3,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식물사회학적 조사를 실시한다.

## 7. 도서육상동물 조사

- 1) 동물의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의 출현정도와 개체수가 가장 풍부한 계절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GIS/DB구축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사대상 : 155개 유·무인 도서
  - 중점조사 : 12개 도서(강화남단·교동·석모·주문·영종·용유·대무의·장봉·신·영흥·선재·덕적)
  - 일반조사 : 중점조사대상의 143개 도서
- 3) 조사항목
  -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과별, 종별 분포현황
  - 천연기념물, 희귀동물, 멸종위기종 등 특징동물 및 군락
  - 서식처의 생물·물리·화학적 요소, 문제점 파악
- 4) 조사방법
  - 현장조사 또는 문헌연구, 주민면접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채집하여 동정할 수 있다.
  - 중점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2계절 이상(조류의 경우 겨울철 포함)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문헌 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 파악 후 1회 이상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조사 대상도서에 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생물 종다양성지수 분석, 우점도, 종다양도, 균등도 주요종 서식분포도를 도면화(mapping)하고, 특정동물의 서식지 위치는 GIS/DB화를 위하여 GPS로 측정된 좌표를 기재한다.

## 8. 해양저서동물 조사

- 1) 동물의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의 출현정도와 개체수가 가장

풍부한 계절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GIS/DB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대상 : 155개 유·무인 도서

- 중점조사 : 12개 도서(교동·석모·아차·대무의·신·시·자월·대이작·굴업·백아·울·대연평도)
- 일반조사 : 중점조사대상외 143개 도서

3) 조사항목

- 서식처 유형분류, 퇴적물 평균 입자 크기
- 동물군별(환형, 연체, 절지, 극피동물) 조성비
- 출현종수, 서식밀도, 생체량, 우점종
- 천연기념물, 희귀종, 멸종위기종 등 특징동물 및 군락
- 종다양성지수, 생태계건강도지수, 생물다양성 예측, 문제점 파악

4) 조사방법

- 크기 1mm이상의 대형저서동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문헌 연구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채집하여 동정할 수 있다.
- 중점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문헌 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 파악 후 1회 이상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조사 대상도서에 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갯벌생물목록 작성과 생태학적 등급을 분류하고, 특정동물의 서식지 위치는 GIS/DB화를 위하여 GPS로 측정된 좌표를 기재한다.

## 9. 해양식물 조사

1) 식물의 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종의 출현정도와 개체수가 가장 풍부한 계절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GIS/DB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대상 : 155개 유·무인 도서

- 중점조사 : 21개 도서(석모·불음·주문·영종·용유·대무의·장봉·영흥·선재·자월·승봉·대이작·소이작·덕적·백아·울·굴업·소연평·백령·대청·소청도)

- 일반조사 : 중점조사대상외 134개 도서
- 3) 조사항목
  - 식물상, 종의 분포상황
  -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등 특징식물 및 군락
  - 특징식물 서식지 특성 및 문제점 파악
- 4) 조사방법
  - 해안선을 따라 조간대에 출현하는 해조류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문헌 연구, 주민면접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채집하여 동정할 수 있다.
  - 중점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2계절 이상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문헌 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 파악 후 1회 이상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조사 대상도서에 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식생조사목록을 작성하고 특징식물의 분포위치는 GIS/DB화를 위하여 GPS로 측정된 좌표를 기재한다.

## 10. 도서·해양환경 오염원 조사

- 1) 도서해양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GIS/DB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사대상 : 155개 유·무인 도서
  - 중점조사 : 41개 유인도서
  - 일반조사 : 114개 무인도서
- 3) 조사항목
  - 지표수(하천, 저수지) 수질측정·분석
  - 도서·해양환경 오염원, 강우량, 하천유량, 홍수량 산정
- 4) 조사방법
  - 중점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조사 대상 도서에 대하여는 문헌 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 파악 후 1회 이상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중점조사 대상도서에 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수질분석은 계절별 1회이상 측정하며 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 11. 주민의식 조사

- 1) 도서해양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조사대상 : 유인 도서 주민 및 이용객
- 3) 조사항목
  - 가족구성, 경제활동,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생활, 교통
  - 섬 생태보전 및 발전계획에 대한 주민의식 등
- 4) 조사방법
  - 설문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설문대상은 최대한 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단위별 사전 주민현황을 조사한 후 설문지 및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조사한다.